#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 환용•장 민 선

연구보고 2016-08

#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굔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 환 용•장 민 선

#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s for Peoples 

연구자 : 최환용(선임연구위원)<br>Choi, Hwan-Yong<br>장민선(연구위원)<br>Jang, Min-Sun

2016.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square$ 연구의 배경

$\bigcirc$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활동형식이나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 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에게 보고나 자료제 출을 강제하거나 타인의 주거나 영업소에 출입하는 방식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함
$\bigcirc$ 행정조사의 필요성, 범위, 수단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국 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bigcirc$ 그동안 행정조사는 행정기관 위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 었고, 수시조사가 만연하였으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고 중복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인 제도라는 문제가 있었음

○ 2007년「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 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여 전히 행정조사는 기업 등 국민에게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도 조사의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고 있음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령의 분석, 검토를 통해 행정조사 절차와 관련한 기업 등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등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 를 도모하며「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제의 실효성 및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 주요 내용

행정조사의 일반론○ 행정조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 유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논의 를 살펴보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을 분석함
$\bigcirc$ 행정조사는 조사 주체, 법령의 근거, 법적 성질, 조사목적에 따 라 구분이 가능하며,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출석 및 진술 요 구,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등으로 나뉨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객관적 조사 대상자 선정의 원칙,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사전 예방적 조사의 원칙, 비밀누설금지 및 부당사용금지의 원칙, 정 기조사실시의 원칙을 들 수 있고, 행정조사기본법상 주요 절차 로는 개별 조사계획 수립, 조사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전문가 참여, 조사결과 통지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른 한계 외에도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권리보장에 따른 헌법상 한계가 인정되며, 행정조사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종래 국가배상, 손실보상 외에도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square$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bigcirc$ 미국은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조사에 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정보수집을 위해서 주로 출입검사, 소환장 발부, 보고의무 등이 활용됨
$\bigcirc$ 독일에서는 행정조사가 행정절차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 지 않으며, 통신법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보고나 자료제출 요 구, 출입검사 등이 규정됨으로써 행정조사가 운영되고 있음. 행 정조사를 통한 명령사항의 이행을 위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bigcirc$ 일본에서도 행정조사를 종래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인식해왔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즉시강제에서 분리하여 비권력 적 수단에 의한 정보 수집 활동으로 보고, 개별 법령에서 질문, 출입검사, 보고의무, 문서제출명령 등의 형태로 규정됨
$\square$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 2016년 행정조사 운영 계획에 따른 약 700여개의 행정조사 목록 을 1 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의 입법 유형은 조사의 방식에 따라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질문•서 류열람, 시료채취, 출석•진술 요구, 현장조사, 실태조사로 나누 어지고,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수집, 법령위 반 여부 확인, 지도•감독 차원의 행정조사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국무조정실의 행정조사 정 비기준과 행정조사기본법상 원칙과 절차에서 도출한 일정한 기 준에 따라 분석, 평가함

- 첫째,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 대부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이나 훈령/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법 률에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현장조사를 규정하기도 함
- 둘째, 조사의 목적과 내용의 명확성에 관해서, 여전히 포괄적이 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사례가 많았던 반면에 구체적이고 한정 적으로 열거한 입법례도 상당수 발견됨
- 셋째,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입법례는 다수 발견하였으나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절차를 두고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음
- 넷째, 조사의 주기에 관해서 수시조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함
- 다섯째, 조사의 절차에 관해서는 기본법상의 절차가 제대로 반 영된 입법례는 많지 않으며, 특히 사전통지의무 관련해서 개별 법령에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조사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7일 전 사전통지의무를 강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 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현장조사시 증표 외에도 관 련 서류를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기본법의 개선논의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square$ 행정조사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행정조사기본법은 우선, 개별 법령상 다양한 유형의 행정조사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을 추가하고, 조사절차에 있어 서 유형별로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함

- 행정조사기본법은 정기조사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수시조사를 인 정하는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이 사전통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조사대 상자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간의 공동조사 요청 및 수락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개별 법령에 있어서는 제4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목적과 대상의 명확화, 달리 규정할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 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치를 개별 법령에 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II. 기대효과

$\square$ 행정조사를 통한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 및 법적 분쟁 발생의 방지에 기여
$\square$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한「행정조사기본법」의 실효성 및 현실적합성 제고「행정조사기본법」및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령의 정비방안 마련에 기여

주제어 : 행정조사, 행정부담,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현장조사, 사전통지, 행 정조사기본법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O According to enlarging the field, type and means of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arry o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y requiring for report and supply materials and visiting one's house or company, for the purpose of gathering informations necessary for deciding policies and performing duties.

O Before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hereinafter "Framework Act") in 2007,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based on each of individual acts, and operated irregularly and focused on the administrative opportunism.

O For this reason, the Framework Act has intended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 and assure the clearness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it is still recognized as a big burden to the companies and people and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Framework Act are not observed well in the actual investigations.Purpose of this study

O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ing legislative improvements in Framework Act and individual articles through analyzing the related acts,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improving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and relevance of the related legislations.

## П. Main Contents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O In Chapter 2, we review the definition, legal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ased on the theory, judicial precedents and Framework Act.

O The Framework Act prescribes the types, basic rules, procedures and rights of the objects, being applied to many kinds of investigations.

O The administrative agency carrying o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has to make an effort to conform to these requirements of the Framework Act and guarantee people's fundamental righ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s.

## $\square$ Review of Foreign Country'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O In Chapter 3, we introduce other country's legal system abo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U.S.A has an legal basis of the investigation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By the judiciary, the basic rules and limitations have been made about three types of investigation such as inspection, subpoena and reporting requirement.

O Next, Germany has legal bases of the investigations on the individual acts like Communications Act. The agency order to report or submit informations, visit one's house or company and can impos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O Like Germany, Japan has no framework act of regulating lots of investigations. As an activity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administrative go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classified to questionnaire, examination on entry and exit, report or submit materials.Analysis of individual legislations regarding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 In Chapter 4, we analyze the articles of the individual act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elicited from the government's standard and Framework Act.

- the legal basis of the investigation
- the clarity of the purpose and object
-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selecting the object
- the regularity of the investigation
- the procedures of the Framework Act such as preliminary notification, certificate presentation, notice of results, etc.
- the protection of the objects' interests

O Through these analyses and reviews, w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related articles and gained the best practice.
$\squar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Framework Act and its related articles

O In Chapter 5, we introduce the legal problems of Framework Act and related articles in terms of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e

Framework Act does not include all kinds of types and reflect each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sanctions to the investigators violating the law. Each of acts has to conform to the guideline of the Framework Act and enhance the clearness of articles.

Finally, we propose directions to improve existing legislation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to people and guaranteeing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 III. Expected Effect

$\squa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e ideas for simpl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procedure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conformity to the Framework Act.
$\square$ This report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research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and revise the current legislations regarding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D Key Words :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Burden, Report, Supplying Informations, Inspection on entry and exit, On-the-spot Survey, Preliminary Notificati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8
2. 연구의 방법 ..... 20
제 2 장 행정조사 일반론 ..... 25
제 1 절 행정조사의 개념과 분류 ..... 25
3.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 ..... 25
4. 행정조사의 분류 ..... 35
제 2 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42
5. 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 ..... 42
6. 객관적 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 43
7.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 43
8. 사전예방적 조사의 원칙 ..... 44
9. 비밀누설금지 및 정보 부당사용금지의 원칙 ..... 45
10. 정기조사 실시의 원칙 ..... 45
제 3 절 행정조사의 절차 및 한계 ..... 46
11.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 ..... 46
12. 행정조사의 한계 ..... 54
제4 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58
13.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 59
14.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 60
15. 행정절차법에 의한 구제 ..... 61
16. 기 타 ..... 62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 63
제 1 절 미 국 ..... 63
17.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63
18. 행정조사의 유형 ..... 64
19. 행정조사의 한계 ..... 67
제 2 절 독 일 ..... 74
20.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 74
21.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례 ..... 75
제 3 절 일 본 ..... 81
22. 행정조사의 개념 ..... 81
23. 행정조사의 종류 ..... 82
24. 행정조사의 절차 ..... 86
25.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88
제 4 장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 89
제 1 절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 현황 ..... 89
제2 절 행정조사의 입법 유형 ..... 93
1．개 관 ..... 93
2．보 고 ..... 94
3．자료제출 ..... 98
4．출입 검사 등 ..... 101
5．현장조사 ..... 103
6．실태조사 ..... 107
제 3 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 분석 ..... 109
1．분석 기준 ..... 109
2．분석 내용 ..... 114
제 5 장 행정조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41
제 1 절 「행정조사기본법」 의 개선방안 ..... 141
1．「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 ..... 141
2．「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 143
제2 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152
1．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 규정의 문제점 ..... 152
2．개별 법령에서의 행정조사 규정 개선방안 ..... 154
제 6 장 결 론 ..... 161
제 1 절 행정조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 162
제 2 절 행정조사 합리적 운용 및 실효성 확보 방안 ..... 166
참 고 문 헌 ..... 169
《부 록》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목록 ..... 175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목표를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두고 보다 적극적•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행정의 영역이나 활동형식, 수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행 정작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자료나 정보의 수집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증대되고 있다.1)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하며, 행정기관은 소극적 으로 국민에게 보고나 자료제출 등 일정한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정보 를 수집하거나, 적극적으로 주택이나 영업소에 출입하여 관련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장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 도 한다. 이처럼 행정조사의 필요성, 범위, 수단이 확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 고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기업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다보니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위주로 규 정이 되어 있었고, 수시 조사로 인한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 며, 조사 절차에 대한 통제나 조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피조사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부 처 및 기관이 조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행정조사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 도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2007년 국 무조정실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행정조사에 적용되는 일반법인「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0]「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의 기본원칙，조사절차의 통제，피조사자 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 을 완화하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여전히 행정조사 는 기업에게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2）행정 조사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역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즉，「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과 조 사 실무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행정조사기본법」에도 행정조사기관 측의 사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규정이나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행정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관한 상세한 규정 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령의 분석，검토 를 통해 행정조사 절차와 관련한 기업 등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 감하고 기업 등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행 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제의 실효성 및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연구의 범위 및 구성

현행 행정조사 제도를 기업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1]중심으로 개별 행정조사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이를 위 해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매년 말에 차년도에 실시할 행정조사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무조정실에 제출된 행정조사 목록을 통해서 전체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고，근거 법 령의 규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조사의 기본원칙이나 절차， 통제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것 이다．또한，기업 등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 정하여 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개 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 2 장에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행정조사의 개념과 그 유형，법적 성격을 살펴보고，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을 중심 으로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 및 한계 등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다． 동법은 2007년 5월 17일（법률 제8482호）자로 제정되어 같은 해 8 월 18 일자로 시행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어 그동안의 사회적•경 제적•정치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동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검토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 점을 도출한 후 이를 제 5 장의 개선방안 모색에 활용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해외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를 검토하기로 한다．우리나 라와 같이 행정조사에 관해 기본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 는다．미국은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 칙을 천명하고 있고，개별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 고，판례를 통해서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한계에 관한 이론이 확립 되어 있다．독일과 일본은 행정절차법에서 별도로 행정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조사를 운영하고 있 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사 규정을 분석, 검 토할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제공받은 행정조사 목록(2016. 4. 기준) 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전부 조사하여 1 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 정조사의 입법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 기준을 도출하고, 그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들을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 관계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겨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개 별 법령에 적절히 반영하여 기본법이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시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조사기본법 자체에도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장 측면이 보강 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권력적 행정조사 의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 과 절차가 개별 법령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1)선행연구 분석, (2)행정조사 관련 국 내외 문헌 연구, (3)개별법령상 행정조사 실태 조사, (4)전문가 의견수 렴, (5)공동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 （1）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를 기획하면서 검토한 행정조사 관련 대표적 선행연구는 2005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와 2013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행정부담감축을 위한 행정 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그리고 같은 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 한「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등이다．

첫째，「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이론 및 해외 입법사례 등 을 검토하고，행정조사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2007년에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 에，동법의 제정 취지 및 조문별 해석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다만，법 제정 이후 동법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행정부담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각종 행정조사로 인해 일반 국민 및 기업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우리나라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고，제도적•절차적•통제적•조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동 연구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조문별 개선방안 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실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셋째，「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정비 방안」은 한국법제연구 원에서 2010년 수행한「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영업 규제와 관련하여 중복적 또는 불필요한 자료제출 규정이나 출입 검사 등 행정조사 규정을 검토 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분야별로 대표적 법률상 행정 조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 적인 분석이 돋보이나，영업 관련 행정조사를 연구의 범위로 하고 있고

분석의 기준이 조사의 근거의 구체성，명확성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밖에 행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2004년 한국 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규제개혁 차원 의 접근을 중심으로」가 있고，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태를 파 악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조사 간소화방안을 제시한 것 으로서 2007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 화방안 연구」 등이 있다．

## （2）문헌 연구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라고 할 수 있다．국내에 서 행정조사의 일반이론에 관한 각종 저서와 논문 등을 전부 검토함 으로써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등에 관해 파악하고，행정조사기본법 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판례 등을 활용하였다． 한편，외국의 행정조사 관련해서는 국내에 소개된 미국，독일，일본의 행정조사에 관한 일부 문헌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문헌 및 입법과 판례 등을 검토하여 각국의 행정조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3）실태조사

행정조사가 기업 등 국민에게 가져오는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중심 의 행정조사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사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제공받은 행정조사 목록（2016．4．기준）을 바탕으로 행정기관별 행정조 사의 법적 근거 규정을 중심으로 행정조사의 실태를 파악하고，일정 한 기준을 도출하여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규정을 분석，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입법례를 제시하고，한 편으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입법례를 소개하였다．

## (4)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여러 법률 전문가의 자 문을 얻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4 회 개최하였다. 2016. 5. 4. 제 1 차 회의를 시작으로 5. 25. 제2차 회의, 6. 22. 제3차 회의를 거쳐 7. 28.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세부 내용 |
| :---: | :---: |
| 제 1 차 전문가회의 (2016. 5. 4. 만복림) | 목적 : 행정조사 관련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참석자 : 김재광(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 수),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조이현(중 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식(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 윤혜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미희(서울시립 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 제 2 차 전문가회의 (2016. 5. 24. 명가의 뜰) | 목적 : 행정조사 관련 법적 쟁점 논의(I) - 행정 조사의 개념과 범위 <br> $\square$ 참석자 : 김재광(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 수),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신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조이현(중소 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식(국민대학교 행 정학과 교수), 이진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제 3 차 전문가회의 (2016. 6. 22. 달옆의 별을 담아) | 목적 : 행정조사 관련 법적 쟁점(II) - 행정조사 의 한계와 권리구제 참석자 : 김지영(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다현(한국교원대학교 강사), 장미희(서울시립 |


| 구 분 | 세부 내용 |
| :---: | :---: |
|  | 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최 유(한국법제연구 원 부연구위원),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 위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제 4 차 전문가회의 <br> (2016. 7. 27. 진진바라) | 목적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의 실태 및 문제점 연구 방향 <br> 참석자 : 김재광(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 수),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조이현(중 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식(국민대학 교 행정학과 교수),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목포대학교 법학 과 교수) |

## (5) 공동연구

이번 연구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과 장민선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로서, 각 연구자의 전공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분하였다. 제 2 장의 행정조사의 일반론에 관해서는 행정법 전공자인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담당하고, 제 3 장의 해외 법제 분석은 외부 전 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1절 미국과 제2절 독일은 장민선 연구위원이, 제3절 일본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제4장의 개별 법령 에 대한 분석, 검토는 장민선 연구위원이 수행하였고, 제 5 장의 개선방 안 도출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연구자가 공동 작업을 하 였음을 밝혀둔다.

## 제 2 장 행정조사 일반론

## 제 1 절 행정조사의 개념과 분류

## 1．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

## （1）행정조사론의 전개과정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 보를 필요로 한다．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일정한 정책을 결정하거 나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요청되며，이를 위 해서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이나 행정목적을 위해서 관련되는 정 보를 수집하는 작용이 아무런 한계나 절차적 통제 없이 허용되는 것 은 아니다．특히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목적에 대한 정당성，즉 행 정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이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법적 가치，예를 들면 개인정보나 영업정보 등에 대한 보호가 다른 측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서 등장하는＂행정조사＂의 개념은 일정한 의 무를 전제로 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지만，행정현상의 복잡화•다양화•다기화（多岐化）등 행정환경의 변화는 보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 또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과정으로서＂행정조사＂의 개념 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대다수의 행정법교과서에서는＇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 유 형으로 다루어왔던 체계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독 립적인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의 체계 속에서 탈피해서 독립 적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기저에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 조사기본법」의 제정•시행에 터잡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던 전 통적인 행정법이론체계에서＇행정조사＇는 행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적 관계로서 행정행위에 부수된 관계로 파악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정책결정 또는 행정목적 자체의 합리성•과학성을 요구하게 되고，정 보의 수집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활용（또는 제공）에까지 법적 관심이 미치게 되면서 개인정보나 영업정보 등 정보의 보호라는 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꾀하게 된다．즉，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 라는 사후적 관점에서의 통제 대상이 아닌，일련의 행정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수집이나 정보의 관리•활용을 포섭하는 독립적 행정작용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로 인한 개인정보나 영업정보 등 보호해야 하는 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정법이론이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 행정법규에서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존재하던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그 결과 제정된 것이「행정조사기본법」이다．

## （2）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학설의 경향

앞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했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법 교과서에서 행정조사는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독립된 행정작용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홍정선 교수는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에 관해서 ＂행정강제•행정벌 내지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만은 아니며＂，넓 은 의미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3）．박균성

[^2]교수는 "행정조사를 독자적인 행정수단으로 인정하고 비권력적인 행 정조사를 포함하여 행정조사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4)"고 하면서 그 이유로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중점이 있 는 행정작용5)"으로 "모든 행정조사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기업의 영업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법적 통제를 가할 필 요성"이 있음을 들고 있다6). 그밖에 다른 교과서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하여 서술하면서 주로 「행정조사기본법」의 규 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7).

행정조사란 종래 협의설에 따라 권력적 조사작용이라고 이해되어 왔으나,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 용으로서 권력적•비권력적 조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그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발생 시킨다는 점에서 사실행위와 법적 행위가 결합된 행위라고 할 수 있 다.8) 이에 관하여 행정조사를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로 서의 행정조사로 나누고,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의 명령형식(출두명 령, 출석명령, 기업에 대한 보고서, 장부 제출명령 등)과 준법률행위적 확인행위의 형식(자료 확인이나 검정)으로 구분하며, 출입이나 심문 등은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9)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496쪽.
5)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496쪽.
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496쪽.
7)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439 쪽 ; 최봉석, 행정법총론, 법령정보관리원, 2014, 305쪽 참조.
8)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4, 434쪽.
9)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 • 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45 집(2009. 8), 365쪽 각주 12 번

이와 같은 학계의 접근과 달리 최근에는 행정조사를 규제개혁의 관 점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빈번한 행정조사가 기 업이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합리적인 행정조사를 위 하여 절차적인 통제를 부과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화방안 연구」 에 따르면，행정조사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경영외적 부담＇의 $61.3 \%$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외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행정조사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10）．한국행 정연구원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과다 한 조사대상，수시조사，조사내용의 중복이나 광범위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여 조사대상 선정， 집행체계，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1）．

## （3）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

## 가．기본법의 제정 경과

행정조사는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일반적인 업무 감독，정책 입안 에 기초가 되는 통계수집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 왔지만， 개별법상 조사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이 조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12)}$ 또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 해될 우려가 높고，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 등 피조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등이

[^3]지적되어 왔다. ${ }^{13)}$

> <표 1> 행정조사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14)

| 문제점 | 상세 내용 |
| :---: | :---: |
| 관 주도의 행정조사 관행 지속 | IT 기술의 발달로 민간•정부기관간 정보 유통 활발, 기업에 대한 감시장치의 확대로 규제의 자율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 분의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관리 |
| 유사•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조사 | 기업의 유사•동일한 경영활동에 대해 중복조 사가 이루어져 기업 부담 가중 <br> - 조사자료 공동활용 미흡, 부처와 지자체간 역 할 불명확, 행정조사를 유발하는 인•허가 제 도 중복관리 등으로 중복 조사 존재 |
| 포괄적인 조사요건 <br> 및 절차 미확립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의 사유, 대상 및 내용 등 조사의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 <br> - 자의적 행정조사, 행정조사에 대한 예측 곤란 법령상 증표제시 정도의 절차만 규정되어, 사전 통지 등 절차는 세무, 공정거래조사 등 일부 국한 |
| 제재 위주의 조사 제도 운영 | ○ 현행 행정조사는 주로 법위반 여부 확인과 위 반행위에 대한 처벌 위주로 운영 <br>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 어 형평성 문제 제기 |
| 무분별한 행정조사에 <br> 대한 통제장치 미흡 |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조사 방지를 위한 통 제장치나 불법, 부당 조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의 제도적 장치 미흡 |

13) 국무조정실, 2007년도 규제개혁백서, 2008, 934쪽.
14)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3-5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조사가 기업에게 주는 부담을 경감하고，행정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3일 규제 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행정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15）그 동 안 관 주도의 행정조사 제도를 기업 자율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중복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조사기준 이나 보고양식을 통합하고，개별 법령에 산재된 행정조사의 조사요건 을 명확화•구체화하였으며，조사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하고 제재수 준을 적정화하였고，행정조사의 기본원칙，조사절차 확립 등 행정조사 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 성격의 「행정조사기본법（가칭）」 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6)}$

2004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17）와 기업행정조사 개선방 안의 확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05년 1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 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였다．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절차법」을 보완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률을 제 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 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학계 및 경제단 체의 의견과 행정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을「행정절차법」에 모두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문 제를 고려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18）

[^4]동법의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9)}$

| 기본 방향 | 상세 내용 |
| :---: | :---: |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정립 | 행정조사는 제도개선 및 규제순응도를 제 고하는 방향으로 운용 <br> 기업등의 자율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행 정기관의 현지조사 최소화 |
|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각 기관은 매년 당해연도에 실시할 행정 조사의 대상, 내용,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공표 <br>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조사 계획 수립 |
| 행정조사의 절차 확립 |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조사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통지 <br> 조사원의 조사명령서와 증표제시 의무 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보장 |
| 행정편의적 조사 방지 | 행정조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br> 근거법령이 없거나 포괄적인 조사발동 요 건에 의거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자의적 행정조사 금지 |
|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 행정조사권 남용시 처벌 <br> 조사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 <br>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시 이의신청, <br>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공지 |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 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20)

[^5]
## 나. 기본법의 주요 내용

(1) 행정조사의 정의

동법 제 2 조제 1 호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 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 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행정조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자료제출 요구, 출석•진술 요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법 제3조제1항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령 에 행정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만 두고 상세한 조사절차나 방법, 한계 등은 이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기본법의 적용 제외 범위

법 제 3 조제 2 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조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 3 조(적용범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 가안전보장 - 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 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 3 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제 101 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3）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제 5 조（행정조사의 근거）및 제 28 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조사기본법（안）의 제정 단계에서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등 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당초 제 정법안에서는 국가안보•통일•외교에 관한 사항，국방•안전에 관한 사항，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형사－행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만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1)}$ 그러나，조세• 금융•공정위 관련 행정조사의 경우는 국민의 납세의무，금융 및 경 제질서 등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조사절차로서 독자 적인 법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상시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며， 기본법이 정한 절차나 원칙 등을 적용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21）자세한 내용은 김재광 외，앞의 보고서，78－81쪽．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 }^{22)}$ 이에 대해 특히 세무조사는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를 기본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킬 경우에는 동법의 제정 의의가 크게 상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23)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고 동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적용 제외범위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 }^{24)}$ 그러나, 최종 논의단계에서 조 세 금융 공정위 관련 행정조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제 외 범위가 조정되었고, 동법 제3조제3항에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조사에 관해서도 "동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 5 조(행정조 사의 근거) 및 제 28 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 2 항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비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4) 소 결

행정조사는 실정법상으로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입법의 형태 또한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특히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일의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입법의 형태에
22) 김재광, 행정조사기본법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 33 권 제 2 호, 단국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9,500 쪽.
23) 김재광 외,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4, 80-81쪽.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가 임의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 성이 있는 경우의 세무조사의 경우 등의 강제조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형식적으로 세무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 최승필, 세무조사에서의 권리구제 에 관한 법적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KERI Insight(13-07), 한국경제연구원, 2013, 4쪽.
24)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정조사기본법(안) 검토 의견, 2006, 5쪽.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이에 따라 행정조사에 관한 통일적인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25）

따라서 행정조사의 입법유형을 분류하고，그 법적 성격을 밝힘으로 써「행정조사기본법」과 개별법령에 따른 행정조사의 관계를 재정립하 고，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2．행정조사의 분류

## （1）학설상 행정조사의 분류

종래 행정법학에서는 행정조사를 조사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조사， 대물적조사，대가택 조사 등으로 구분하고，조사의 권력성 여부에 따 라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로，조사방법 및 형식에 따라 직접조 사와 간접조사，개별적 조사와 일반적 조사，구두에 의한 조사와 문서 에 의한 조사로，조사영역에 따라 경찰행정상 조사 복리행정상 조사， 재무행정상，군사행정상 조사 등으로 분류해왔다．26）

그 이후 행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주체에 의한 구분，법령의 근거에 의한 구분，법적 성질에 의한 구분，조사목적에 의한 구분으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2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조사의 주체에 의한 구분으로는 국가기관，지방자치행정기관，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조사가 있다．${ }^{28)}$

둘째，법령의 근거에 의한 구분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와 법 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조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 }^{29)}$

25）신상환，行政調査의 法理論과 法制小考，법제연구 제 13 호，한국법제연구원，1997， 238쪽．
26）오준근，＂행정조사의 공법이론적 재검토＂，공법연구 제 31 집 제 3 호（2003．3．），534－535쪽．
27）오준근，앞의 글，535－538쪽．
28）오준근，앞의 글， 535 쪽．
29）오준근，앞의 글，536쪽．

셋째，법적 성질에 의하면，행정행위로서의 행정조사와 사실행위로 서의 행정조사가 있다．${ }^{30)}$

넷째，조사 목적에 따라 i）관리감독 차원의 조사，ii）법 또는 규 제 위반사실 확인 차원의 조사，iii）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iv）행정계획 수립•정책 입안을 위한 실태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한편，조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출석 및 진술요구，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현장조사，시료채취 등으로 나뉜다．「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 정조사를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보고 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로 유형화하고 있다．그런데，개별 법령에 근거하 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조사는 이보다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 다．실태조사도 행정조사의 하나로 볼 수 있고，정보 수집이나 법위반 사항 확인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각종＇조사＇도 행정조사로 볼 수 있 다．예컨대，「자동차관리법」제 30 조의 3 의 경우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중지를 위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규정하 고 있으며，이것은 전술한 유형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2)}$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6．8．12．］［법률 제13486호，2015．8．11．，일부개정］
제 30 조의 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1）국토교 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 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30）오준근，앞의 글，536쪽．
31）오준근，앞의 글，537쪽．
32）＜부록＞「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목록」에 포함된 행정조사의 하나이다．

## 자동차관리법 <br> [시행 2016.8.12.] [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 는 대체부품의 성능 • 품질 인증을 한 경우
2. 제 30 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 인증을 한 경우
3. 제 30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 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의2. 제 30 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 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의3. 제 30 조의 5 제 5 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 31 조제 3 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 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 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2)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유형

「행정조사기본법」제 9 조 이하에서는 행정조사의 유형으로서 출석• 진술 요구, 보고•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를 규정하고 있 다. 개별 법령에서는 보고 명령,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질문, 장부나 서류 조사 또는 검사, 실태조사 등의 유형으로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 3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가. 출석 - 진술 요구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하는 때에 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출석 요구서를 조사개시 7 일 전까지 조사대 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제 17 조제 1 항). 출 석 요구서에는 일시와 장소, 출석 요구의 취지,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제출 자료,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 그밖에 행정조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경우 업무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의 변경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9조제2항).

## 나. 보고•자료제출 요구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고'는 그동안 단순한 사 실행위에 불과하고, 보고의 접수 및 거부, 법적 효과 발생 시기 등에 관한 다툼 및 이로 인한 권리 구제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 문에 학계에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33)}$ 따라서,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행정법학에서 보고는 "하급행정기관이 상 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국민 또는 기업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 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34)}$ 그런데, 현행법상 행정조사로서의 보고는 자료제출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입법의 방식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등 조사대상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형
33) 강현철•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7쪽.
34) 강현철 - 이세정, 앞의 보고서, 27 쪽.

태와 조사대상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형태로 나누 어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일정 한 조사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일시와 장소, 조사의 목 적과 범위, 보고 내용,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그밖에 행정조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보고 요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 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 10 조제 1 항, 제 17 조제 1 항).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밖의 자 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 요 구서를 조사개시 7 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입법례 상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 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것과,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하 나로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 }^{35)}$ 전자는 보칙에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후자는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 }^{36)}$ 일반적인 감독권의 하나로 보고를 하게 할 경우에도 보고사항을 구체 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추상적 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 }^{37)}$ 그리고 보고를 받는 감독청의 요구가 있 을 때 보고를 하게 하는 것과 보고의무를 지는 기관이나 사람이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면 주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것도 있다. ${ }^{38)}$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보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제4조제1항에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고의무를 부 과하는 개별 법률에서는 보고대상 사항을 한정해야 한다.39)
35)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6쪽.
36)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6쪽.
3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7쪽.
38)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8쪽.
39)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5-426쪽.

## 다．현장조사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 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7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 11 조제 1 항，제 17 조제 1 항）．현장출입조사서에는 조사목적，조사기간과 장소，조 사원의 성명과 직위，조사범위와 내용，제출 자료，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그밖에 행정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장조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법 제11조제2항）．다만，조사대상자가 동의하거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증거인멸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외가 인정된다（법 제11조제2항 단서）．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11조제3항）．이러한 증표 제시 의 무는 개별 법령에도 다수 규정되어 있다．

개별 법령에서는 출입검사－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 으며，종래 출입검사•질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출입검사•질문의 근거와 범위，사전통지，출입검사자의 증표제시 의무 등을 법률에 규 정하도록 하였으나，행정조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법과 중복되 는 규정은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40）이에 관하여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과 중복되는 사항은 규정할 필요가 없고，개별 법령에는 출입검사•질문의 근거만 두어도 충분하 다고 밝히고 있다．${ }^{41)}$ 그러나，국회법제실의 「법제이론과 실무」에서는

[^6]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의 시행 이후에 개별법에서는 행정조사의 근거 를 두고, 방법•절차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 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42) 생각건대, 기본법은 개별 법률에 대해 상위법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에 있어서 기본원칙, 방법이나 절차 등의 공통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되도록 행정조사를 규정한 법령에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법 제13조제1항). 자료 등의 영치는 현장조사시 수반되는 행위로서, 조사대상자의 재산권, 프 라이버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원이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 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할 수 있으나(법 제 13 조 제2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검사, 측정, 분석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이 되는 물질에 서 그 일부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견본이나 표본을 모집단에 서 떼어내는 경우 샘플링 혹은 발취라고 한다.43)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법 제 12 조제 1 항). 행정기관의 장 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42)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2016, 595쪽.
43) 네이버 ‘화학용어사전'에서 "시료채취"를 검색한 결과이다.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19935\&cid=50318\&categoryId=50318)
(2016. 10. 31 최종방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시행 령 제7조제1항). 청구를 하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액 및 명세, 산정방법 및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시료채취를 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2항). 청구서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 게 통지해야 하며(시행령 제7조제3항), 이에 대해 이의 절차가 마련되 어 있다(시행령 제7조제4항).

## 제 2 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1. 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 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법 제4조제1항). 조사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상 조사의 목적 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4)}$ 그러나, 조사의 근거 법령에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권 규정을 둔 입법례가 많다.45) 행정조사를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일정한 집단에 대한 정치적 탄압용 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이라고 할 것이 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영역에서 납세자의 형사책임 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발하여진 소환영장은 위법이라는 부적절 목적 금지 의 원칙(improper purpose doctrine)이 판례상 인정되어 왔다.46)

[^7]
## 2. 객관적 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 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고, 조사상 필요하다고 하여 그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47) 개별 법령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입법례도 다수 존재한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조사대상자의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 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복조사 의 문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2004년 이후로 정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부처 내 다른 기관이나 여러 부처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동조사운영계 획을 세워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공동조사)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7)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33쪽.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조사를 해야 하 는 분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 54 조제 1 항 및「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 49 조제 1 항제 2 호，제 4 호 및 제 7 호，「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 1 항에 따라 실시 하는 행정조사
3．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식품위생법」 제 17 조 4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19 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58 조，제 60 조부터 제 62 조까지，제 76 조 및 제 102 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 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이러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행정기 관에 공동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법 제14조제2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 14 조제 3 항）．또한，국무조정실장은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보고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법 제14조제4항）．그런데，공동조사 신청권을 조사대상자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도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4．사전예방적 조사의 원칙

행정조사는 주로 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그러나，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48）인용된 다른 조항들이 모두 행정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식품위생법 제 17 조는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으로서 행정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식품위생법에서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으로는 제 19 조의 4 （검사명령 등），제 22 조（출입•검사•수거 등），제 70 조（지도•감독 등）등을 들 수 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법 제4조제4항). 이 규정은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 는 것으로서 종래 행정조사가 제재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조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조사결과를 제도개선과 법령정비 등 에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49)

## 5. 비밀누설금지 및 정보 부당사용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 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법 제4조제5항).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 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제6항)

## 6. 정기조사 실시의 원칙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예고없이 기 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제 출한 정기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만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50)

첫째,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근거한 국민건강보 험 사업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
49)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 8 권 제 3 호, 101 쪽.
50)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수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 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는 문제된다.

둘째,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셋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에도 수시 조사가 허용된다.

넷째,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제 3 절 행정조사의 절차 및 한계

## 1.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

## (1) 개별조사계획 수립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 17 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1항).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개별 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과 조사의 근거, 조사원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거부시 제재의 내 용 및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 10 조).

## （2）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 구서，제 10 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 11 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누구든지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조사 를 받게 될 것인지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사 내용 및 범위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할 것이다．따라서，출석요구，보고요구，자 료제출요구나 현장조사시에 일정한 내용이 기재된 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행정조사 개시 이 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 통계 작 성을 위한 조사，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 는 임의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즉，이러한 경우에 는 행정조사 개시 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하는 것이 허용된 다（법 제 17 조제 1 항 단서）．

이러한 사전통지 의무는 현재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 규정 된 사례도 적지 않으며，이 경우에 사전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조사의 효력이 문제된다．행정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의 요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판례가 존 재하지 않는다．일본 법원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는 질문 검사권을 행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51)}$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사전통지가 질문검사권의

[^8]적법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52）
미국에서는 사전통지 요건은 전통적으로 확립된 것으로서，행정적 소환장 및 보고서 요구는 보통 조사목적，조사범위，담당부서 및 근거 법률 등의 기재를 포함하는데，이를 결여한 채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 에는 소환장의 적법성 요건의 하나인 조사목적과 구하는 자료의 관련 성 요건에 비추어 위법이 된다고 보고 있다．${ }^{53)}$

## （3）조사 연기신청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자료제 출 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 11 조제 1 항에 의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압수 또는 영치 된 경우，조사를 받는 개인이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시행령 제11조제1항）．행정기관의 장은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 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18조제3항）．

## （4）제 3 자에 대한 보충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 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다른 법률에서 제 3 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거나 제 3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 3

[^9]자에 대해서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항). 다만, 제3자는 원래 조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때에도 법 제17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조사개시 7 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 장소, 취지 등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고(법 제19조제2항),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도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실시를 알려야 한다(법 제19조제3항).

## (5) 조사결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24조). 개별 법령에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 을 둔 경우도 있으나, 날짜를 명시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 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시행 2016.7.28.] [법률 제13902호, 2016.1.27., 일부개정]

제58조(지도•감독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 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2) ~ (3) (생 략)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

##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 109 조(조사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 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 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 (3) (생 략)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 (6) 자율신고제도

2004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현행 행정조사 제도의 문제점의 하나로 관 주도의 행정조사 제도 운영이 지적된 바 있다. 정부와 민 간 사이에 정보의 소통이 자유로워지고, 기업들 자체의 규제 준수의 식이 제고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행정기관 중심 의 행정조사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 }^{54}$ 따라서, 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행정기관이 조사 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 다. 특히, 양곡의 유통현황 조사, 승강기 검사기관의 인력•설비•검 사 실적 조사 등과 같이 정책입안을 위한 단순한 실태조사나 관리감 독 차원이 행정조사와 사실 확인 유형의 행정조사도 최대한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55)
54)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집, 2004. 12. 3, 3쪽.
55)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85쪽.

동법 제 25 조는 자율신고제도에 대해 규정하면서，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고，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 율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과（법 제26조），자율신고를 한 기업과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기업에게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 세제상의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개별 법령에서도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단 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법령에 직접 규정하여 부여할 필요 가 있다．${ }^{56)}$

현재 자율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법령으로는「환자안전법」과「항 공법」，「항공보안법」을 들 수 있다．「환자안전법」 제 14 조에 따르면 환 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 실을 보고할 수 있으며（제1항），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고를 하는 경우 에는「의료법」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항）．「항공법」 제49조의4에서는 경미한 항공장애 상태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또는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사람은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보고자의 의사에 반 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항 공보안법」 제 33 조의 2 에서는 항공보안에 대한 자율적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 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상의 법률에서 자율보고 또는 자율신고를 도입한 것은 사고나 장애상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를 자율보고나 신고로 갈음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6）김재광 외，앞의 보고서， 87 쪽．

## 환자안전법

[시행 2016.7.29.] [법률 제13113호, 2015.1.28., 제정]
제 14 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1)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 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보고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 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14호, 2016.3.29., 일부개정]
제49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상태(이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 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 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 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 33 조제 1 항제 5 호부터 제 19 호까지 또는 제 21 호부터 제 30 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람 이 그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 에는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보안법

## ［시행 2016．1．19．］［법률 제13811호，2016．1．19．，일부개정］

제 33 조의 2 （항공보안 자율신고）（1）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 다）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 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공항운영자등은 소속 임직원이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 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 수•분석•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교통안 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제 129 조부터 제 132 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 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 태，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 야 하며，그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법 제29조제1，2항）．이것은 각 부처별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를 위 한 조사를 규정한 것으로서，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는 국무조정실에 서 담당한다．국무조정실은 점검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해당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

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 여야 한다(시행령 제 14 조제 3 항).

## 2. 행정조사의 한계

## (1) 실체적 한계

## 가.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 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 }^{57)}$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상 근거를 받는 행정 처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행정기관의 일 방적인 명령이나 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기업 등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고, 위반시에 일정한 제 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명확한 근 거를 두어야 하고, 비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을 준 수해야 할 것이다. ${ }^{58)}$

현행법상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등 행정조사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나 대상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조사의 주체나 보고의무자, 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 이 결여되어 있거나 행정규칙에서 이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 어서 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59)

[^10]또한 보고의무 등 부과의 목적은 적정하고도 효과적인 행정을 도모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보고의무 등 부과를 통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보고의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두는 경우에도 행 정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태료의 금액도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 }^{60)}$

## 나.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에 의한 한계

전술한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법령상 규정된 목적에 따른 조사권 한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 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조 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다. 진술거부권의 적용 여부

헌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당연히 공판 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여기에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 는 진술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것이라면 범죄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발견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항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형사절차에서 행하여진 진술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 에서의 조사절차에서 행한 진술도 포함된다.61)
60) 강현철 - 이세정, 앞의 보고서, 30-31쪽.
61) 정한중,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외법논집 제 38 권 제 2 호, 한국외국어대

행정조사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 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나 자료제출요구, 출석•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 동"을 행정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조사대상자에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에 답하도록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진술을 강제하고 있다.
행정조사 절차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제 3 자에게 진술을 강제하는 경 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학계에서는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 }^{62)}$ 생각건대, 오늘 날에는 행정권의 비대화와 권력적 행정의 증가로 인해 권력적 행정조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 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권리를 형사절차에 국한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형사절차, 행정절차, 민사절차에 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63) 따라서, 구두 진술이든 서면보고든지 이를 토대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64)}$

[^11]
## (2) 절차적 한계

## 가.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절차

행정조사의 절차에 관해 개별법상 규정된 절차 외에도 행정조사기 본법에 규정된 절차인 사전 통지의무, 출입 검사 등의 경우 증표제시 의무, 조사 후 결과 통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 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 견제출(법 제 21 조), 조사원의 교체신청(법 제 22 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권리(법 제23조) 를 보장하여야 한다.

## 나. 영장주의 적용 여부

헌법 제 12 조제 3 항과 제 16 조 후단에 의해서 인정되는 영장주의가 행 정조사에도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영장주의는 원래 형사 사법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나, 주거나 가택에 대한 출입 검사 등 행정조사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추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주의를 배제할 것인지 의문이다. ${ }^{65)}$ 이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가 적용되지 않고,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만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66) 반면에, 행정조사가 형사소추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장이 필요하고, 기타 권 력적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나 영장을 기다 려서는 적시에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 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67) 생각건대, 일반적인 행정조사에 모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의 가택이나 영

[^12]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나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조사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와 관계 서류를 함께 제시하도 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판례는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 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 수•수색영장없이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등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 여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68)}$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도 출입국관 리법에 의한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69)}$

## 제 4 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행정청의 조사활동이 관련 법령이나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 게 행해졌다면, 그러한 조사활동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권리 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행정조사가 적법하게 행해 진 경우라도 이 조사행위로 인하여 일반적•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조 사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라면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보상 할 수 있는 법리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조사가 행정활동이 나 행정결정을 위한 전제로서 사전절차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 다면, 그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차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8)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 도 7718 판결
69) 의정부지법 2008.4.23. 선고 2008고단 291 판결

## 1．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 （1）항고소송

행정조사가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것을 대상으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이것은 행 정조사의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되는데，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가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 하기 어려울 것이고，특히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와 동의하에서 이루 어지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처분적 성격이 배제 될 것이다．종래 세무조사의 경우 종래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비권력적 조사작용으로 보아 처분적 성격 을 인정하지 않았으나，대법원은 최근에 세무관서가 세무조사를 하기 로 결정한 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 시한 바 있다．70）그러나，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손해배상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조사대상자가 손해를 입은 경 우에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이 속한 행정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국가배상법」제 2 조에서는＂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로서 의 성질을 갖는 행정조사의 경우도 이러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

[^13]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행정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한 배상의 경우에는，행정조사는 물론이고 이러한 행정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한 손해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이 때 행정조사로 인하여 생긴 신체•재산상의 손해 이외에도 기업비밀 침해，영업방해，신용상실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행정조사로 인한 사생활침해，기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 한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2．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조사대상자가 일반적인 사회 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을 당하였다면，이러한 경우에는 손실보 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행정조사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72)}$ 등이 있다．이들 법률에서는 토지，건설，해양 등의 분야에서 측량（조사）을 위해 토지를 점용•사용하거나 토지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로 국한되어 있으며，그 외 각종 물건의 수거， 보고서 또는 자료제출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73)}$ 이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시료채취 등의 경 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74），개별법에 손 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시료채취 등의 경우에는 「행정 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0 조（토지에의 출입 등）
7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 한 출입의 허가 등）
73）신종익•임상준，『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규제개혁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2004，51면．
74）「행정조사기본법」제 12 조

## 3．행정절차법에 의한 구제

「행정절차법」제 3 조제 1 항에서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 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행정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행정 조사를 행정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행정조사가 「행 정절차법」에 행정절차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활동이나 행정결정을 위한 사전절차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 행정 조사를＇행정절차＇로 볼 수 있다．75）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 요건 중 증표 제시 의무와 사전통지 의무는 개별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행정조사기본법」에 명 시됨으로써 행정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동법 제 11 조제 3 항에 따르면，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 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하고，동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르면，조사개시 7 일 전까지 조사의 내용，일시와 장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담긴 내용의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나，동항 단서에서는 이러한 사전통지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 다．이와 같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조사 가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이나 조사자에 대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의 효력에 대해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이는 행정조사의＇처분성’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행정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가 결여된 경우 조사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 3 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14]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영장 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 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 입국관리법 제 81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제 3 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 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 며, 사전 동의가 결여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 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76)

## 4. 기 타

행정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 별 법령에서는 조사행위에 대하여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하는 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 }^{77)}$ 조사대상자는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조사행위를 과태료 부과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런 의미에서 과태료 재판도 행정조사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78)

[^15]
##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 제 1 절 미 국

##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미국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하 'APA'라 한 다)79)에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행정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80) 동법 제 555 조(c)에서 "소환장•보고서의 요구•검사 기타의 조사행위는 요 구는 어떠한 방법이거나 목적임을 불문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발부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동조(d)는 소환장 발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근거규정 외에 동법에서는 행정조사의 실체 적 한계 및 절차적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81)

행정절차법을 일반법으로 본다면 개별 영역에서의 행정조사는 각 정부조직(부처, 위원회)과 업무를 규율하는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다. 예컨대 국토부의 해안경비에 관한 규정인 해양경비법(Cost Guard Act) 제93조(a)(5)(14 U.S.C. 93)는 지휘관(Commandant)은 해안경비 직무수행 에 필요한 어떤 조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2) 또한 사 법행정(Judicial Administrative Regulation)에서 교도소에서의 차별금지를

[^16]규정한 28 C.F.R. 부분에서는 제115.171조에서 교도소에서 성적 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행정 또는 형사조사권을 발동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83) 또한, 연방해양위원회는 해상법(Shipping Act) 제1712(b) (4)조에 의하여 소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세미납자에 대하여 재무 장관이 승인할 수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84}$ 또한,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증권거래법(Security Exchange Act) 제17(a)조, 17(a)25 조에 의하여 중개인-거래인(broker-dealer) 그룹에 대하여 거래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85)}$ 그 밖에도 다수의 법률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비밀법(Trade Secrets Act, 18 U.S.C. §1905); 건강비밀에 관한 소환(42 U.S.C. §290dd-2, 42 C.F.R. Part 2);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2701); 납세환급내역 관련(26 U.S.C. §6103),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 등. ${ }^{86)}$

## 2. 행정조사의 유형

미국에서의 행정조사의 유형은 크게 출입검사(inspection), 소환장발부 (subpoenas), 보고서요구(reporting requirement)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7) 출입검사란 보건, 안전, 위생, 근로조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주택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 경 우에 영장주의를 요하는 압수와 수색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된다.88)
83) 28 C.F.R. §115.171.
84) 46 U.S.C. § 1712(b)(4).
85) 15 U.S.C. § $17(\mathrm{a})$.
86) 관련 법률명은 다음 자료 참조.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Policy, Report to Congres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ties by Executive Branch Agencies and Entities, available a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URLs_Cited/OT2014/13-1175/13-1175.pdf
87)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162-164쪽.
88) 이익현, 앞의 글, 50 쪽.

법원에서는 초기에 주거에 대한 조사에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 한 예도 있으나, 영업 및 영업장에 대한 조사에 영장이 필요한지 여 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89) 행정절차 법 제 555 조(b)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로부터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 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 제555조(c)에서는 출입검사, 보고서요구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에 의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며, 수정헌법 제 14 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인 한계를 갖는다. 헌법적 한계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1967년 연방대법 원이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francisco 판 결90) 주거지에 관하여 특별한 개인의 사적 공간이므로 영장(warrant)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소환장(subpoena) 발부는 행정기관이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 증 인의 출석, 회계장부 등 각종 문서와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소 환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형사소추 절차에서 소환장은 법원에 의해 발 급되나 행정기관도 특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 555 조(d)에서는 "법률의 근거를 가지는 행정상의 소환장은 당사자에 대하여 구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또한 절차의 규정 에 따라 요구하는 증거의 일반적 중요성과 합리적인 범위를 제시함으 로써 발하여야 한다. 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는 한 도에서 소환장 또는 그에 유사한 명령을 유지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증인의 소환을 요구하거나 벌칙을 부과하고 합 리적 기간 내에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이 발급한 소환장은 법원이 발급한 소환장과 달리 당사자가 정
89) 이익현, 앞의 글, 50 쪽.
90)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387 U.S. 523 (1967).

보제공의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다. 다만, 행정청은 법원에 제소하여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91)

예컨대, 법무부에서 행정조사에 관하여 규율한 18 U.S.C. 제 3486 조 에 따르면 행정소환장은 연방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청은 법원의 허락없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 }^{92)}$ 연방대법원은 행정청의 소환장 발급권한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범 죄 발생의 상당한 가능성(probable cause)에 미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환장에는 소환목적, 소환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위원회법 제19(c)조 및 제 21(b)조, 자문법(Advisers Act) 제209(b)조,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제42(b)조에 의하여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자료라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사람은 행정조사 당사자인 감독관 등에게 공식문서인 행정소환장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93)

보고서 요구권은 행정기관이 개인, 단체 및 회사의 조직, 사업, 행 동, 관행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연차보고서, 특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같은 양식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직접 행정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방법이다.94) 보 고서 요구는 출입검사와 함께 행정절차법 제555조(c)에 기록된 행정조 사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법적 근거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소환장발 부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요구권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영장 소송에 의 한 강제를 인정하고 있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7]
## 3. 행정조사의 한계

미국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조사에 사인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자력으로 이를 집행할 수는 없고, 그 적법 여부를 사전에 법원에서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집행을 명하는 '사법적 집행의 원칙'이 확립되어 왔다는 것이다.95) 이 것은 프라이버시권리 등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행정조사의 남용 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개인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 하에서 법원이 행정 조사를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확립시켜왔다. 즉, 강제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조사 목적 이 정당해야 하고, 조사대상이 목적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조사범 위가 적절해야 한다. ${ }^{96)}$ 수정 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와 수정 헌법 제5 조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이 행정조사에도 일정한 경우에 적용되나, 개인의 기본권 보호 못지 않게 적극 국가의 역할을 조화시키기 위해 서 1940년대 이후에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입 장, 즉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97)}$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에 대하여 영 장주의를 규정하고 영장 없는 수사로 획득한 증거를 배제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영장주의의 요건에 따르면 영장은 수색 또는 압수를 위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와 대상 장소, 사람, 물건 등에 대한 특정 성(particularity)이 있는 경우에는 발부될 수 있다.98) 또한 연방대법원은

[^18]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판단에 있어서 종합판단(totality of circumstance) 원칙을 취하여 영장발급을 위하여 드러난 정황(정보의 정확성, 진실 성,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 }^{99)}$ 종합판단의 기준은 조사 자체의 객관 성, 조사목적 부합성, 절차의 공정성, 조사 전체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100)}$ 동 헌법은 형사소송법상 압류 및 수색을 주로 전제하고 있으나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완화하되 이와 유사하게 적 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 행정조사에서의 영장주의 적용원칙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영장주의가 요 구된다. 1967년 연방대법원은 Camara v. Municipal Court 판결101)에서 주거지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동 판례 이전에는 각 주법에서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를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므로 영장 없는 행정조사가 비 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1950년 District of Columbia v. Little 판결102)에서 주정부의 위생검사관이 행정조사를 위하여 영장 없 이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1959년 Frank v. Maryland 판결103)에서 연방대법원은 건강 검사관(health inspector)의 행정조사에 관하여 주거지에 대한 수색이라 할지라도 형사상 수색 및 압수절차가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4조에서 규정한 영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9]하지만 Camara 판결104)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주택검사관(house inspector)의 수색에 있어서도 영장주의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동 판결 에서 법원은 영장발부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사소송법과 달리 범죄 발 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 화이트 대법관의 판단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 4 조의 근본목적이 "행정권의 자의적 침입으로부터의 배 제"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조사가 아닌 통상적인 행정조사라고 수 정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될 수는 없다. 또한, 보건조사와 같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정조사는 공익목적에 부합하 는 활동이지만 수정헌법 제4조의 합리적인(reasonable)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하며, 행정조사가 주법 등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다면 영장주의는 행정조사 상대방인 당사자가 수정헌법 제4조에 규정한 프 라이버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5년 연방대법원은 City of Los Angeles v. Patel 판결105)에서 로스앤젤레스시법(Los Angeles Municipal Code) ${ }^{106)}$ 에서 호텔운영자는 90 일 이상 숙박하는 고객에 대하여 기록(이름, 투숙날짜, 객실번호, 자 동차 정보 등)을 보관하고 경찰국에서 조사(inspection)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 규정이 당사자가 법원에 소환장(subpoena)의 적절성 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문언 그 자체로 (facially) 충돌한다고 판단하였다.
104)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387 U.S. 523 (1967).
105) City of Los Angeles v. Patel, 576 U.S. $\qquad$
106) Los Angeles Municipal Code(LAMC) §41.49.

## (2) 행정조사에서 영장주의의 완화

하지만 사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행정조사에 관하여 공공성, 위험 성 등을 이유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적용하였다. 예컨대 "총기업, 주류 업, 광업" 등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위험성과 긴급성이 높은 산업이 므로 영장없는 행정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영장주의의 예외 가 적용되는 산업은 법률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closely or pervasively regulated") 산업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970 년 주류업(Colonnade Catering Corp. v. U.S.) ${ }^{107), ~ ㅊ ㅗ ㅇ ㄱ ㅣ ㅇ ㅓ ㅂ(U . S . ~ v . ~ B i s w e l ~}$ 1) ${ }^{108)}$ 등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한편, 1987년 연방대법원은 New York v. Burger 판결109)에서 영장주의 예외사업을 "주류, 광업, 총기 등"의 산업에서 벗어나 폐차업까지 확 대하면서 행정조사에 대한 적법절차의 범위를 완화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10) 뉴욕주 경찰이 뉴욕교통법 제415 조111)에 따른 폐차장에 대한 무영장조사권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폐차업이 앞선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총기업, 주류업, 광업" 등과 같이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 법원은 영장 없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당해 행정조사가 주정부에 상당한 이익(substantial government interest)을 부여하며, 기존 규제에 필요하며, 영장이 없더라도 이를 대 안하는 충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112)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107) Colonnade Catering Crop. v. United States, 397 U.S. 72 (1970).
108) U.S. v. Biswell, 406 U.S. 311 (1972).
109) New York v. Burger, 482 U.S. 691 (1987).
110) Rosann Greenspan, The Transformation of Criminal Due Process in Administrative State, 2014, at. 99-100.
111) N.Y.Veh. \& Traf.Law § 415-a5.
112) New York v. Burger, 482 U.S. 691 (1987).

## (3) 행정조사에서 영장제도의 예외

영장없는 행정조사도 긴급한 상황 또는 위법발생의 개연성이 상당 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113) 예컨대 1978년 연방대법원 은 Michigan v. Tyler 사건에서 생명과 재산 등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 되어 조사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없는 행정조사가 인정되었 다. 따라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관의 주거지 침입 및 방화에 사용되 는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의 일반적인 발견(plain view)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정조사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긴급성 원칙은 합리적인 시간, 장소 등의 제한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 밖에 안전법규 위반조사를 위한 행정권 발동 등 일반적으로 생 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 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114) 예컨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한 전염병 검사, 음주측정, 마약복용 검수 등 개인적 법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가 인정된다. 예컨대 1989년 Skinner v. Railway Labor Executive Association 판결115)에서 연방대법원 은 철도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인 혈액검사를 규정한 연방법에 따라 연방철도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이 실시한 영장 없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공익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 다. 또한 1989년 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 v. Von Raab 판결 116 ) 에서 연방대법원은 마약검사, 무기소지 등은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관세 청(Customs Service)이 독자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
##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를 통하여 조금씩 변동되어 왔지만 9•11 테 러가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조사권한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2011년 연방대법원은 Kentucky v. King 판 결117)에서 경찰이 스스로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s)으로 인한 영장 없는 조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 이 판결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Payton v. New York 판결118)에서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의 의견을 변 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수색을 금지하였다. 2014 년 연방대법원은 Raily v. California 사건에서 체포 중 영장 없는 수색 또는 압수로 획득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digital contents)는 위헌적 증 거라고 판단하였다.119) 로버츠 대법관은 동 판결에서 "디지털 정보는 행정집행관을 위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주변 또는 겉면에 대한 일 반적인 발견(plain view)은 가능하지만 디지털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는 오늘날 "사적 정보(the privacies of life)"의 총체를 포함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 생활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 (4) 영장 없는 행정조사에 대한 증거배제의 원칙

일반적인 증거배제의 원칙(Exclusionary rule)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 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1914년 Weeks v. United States 판결 ${ }^{120)}$ 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것은 독사과의 원칙

[^21]("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 원 칙은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행정조사가 없었더라도 동해 증거가 발견 되었을 것임(inevitable discovery)이 명확한 경우에는 증거배제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법 등으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

증거배제의 원칙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이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Camara 판결에서 법원은 보건관련 조사 등 공익성을 고려 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행정조사의 결 과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21) 또한 1986년 연 방대법원은 Dow Chem. Co. v. United States 판결122)에서 행정조사를 위한 영장은 "현재 위법상태의 발견 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입법 또 는 행정기준정립을 위해서"도 발급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에 따 르면 행정조사의 결과가 증거배제의 원칙에 의하여 배제될 가능성을 행정조사에 비하여 높지 않게 인정된다. ${ }^{123)}$

## (5) 행정조사의 목적 또는 방식상의 한계

행정절차는 행정부에 의하여 위임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위원회)의 권한범위와 실현내용에 근거한다. 따라서 조사 목적상의 한계는 행정조직상의 권한범위에 의하여 규정되며 제한된 다.124) 법원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 행정조사의 위법
121)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387 U.S. 523 (1967).
122) Dow Chem. Co. v. United States, 476 U.S. 227, 252 (1986).
123)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at 88-89.
124)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at 81-82.

##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성을 평가하지만 행정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행정조사의 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전제조건을 두지 않으므로 행 정청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당해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이는 형사조사를 위하여 최소한 범죄성립에 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요구되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 }^{125)}$ 또한 행 정조사는 공공목적달성을 의도하므로 한 당사자의 죄의 유무를 밝히는 형사조사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조사를 위하여 보다 넓은 재량을 가짐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에 따 르면 행정조사와 형사조사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권한집행행위이 므로 각각 신의성실(good faith)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두 조사가 동 시에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126)}$

## 제 2 절 독 일

##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독일 행정법학에서 독자적인 행정작용 형식으로서 '행정조사'를 별 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조 사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정조사(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독일법상의 규정 은 매우 다양하게 규율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용어도 다양하다.
125)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at 80.
126)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at 84-85.

일반 행정법령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정보제공요구(Auskunftsverlangen), 행정조사(Verwaltungsermittlung), 압수(Beschlagnahme)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강제성을 가진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에서 현장조사(Außenprüfung)의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생 관련 법령에 있는 행정검사 또는 검역 (Inspektion) 규정도 행정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규정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침익적 행정으로서 성격상 행정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한의 명확한 범위와 그 행사방법과 절차, 불복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 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 독일에서 행정조사 권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피조사 자에 대한 법치행정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례

## (1) 연방통신법 상의 정보제공의무 및 조사

독일의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은 행정조사에 요구되 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이다.

## 가. 정보제공요구

통신법은 공적 통신망의 운영자와 공중에 대한 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통신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 내에서 규제행정청의 요구에 따라 이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보고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 127 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규제행정청이 구체적으로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있는 경우(제 127 조 제 1 항 제 2 문), 매출액에 대한 보고요구(127조 제 2 항 제 1 호),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영업상의 서류를 열람하고 검사 (127조 제2항 제2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규제행정청은 문서를 통하여 보고 또는 검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서에는 보고 요구의 법적 근거, 대상 및 목적, 보고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 }^{127)}$ 이것은 우리 행정조사기본법 제 10 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통신법은 기업주, 당해 기업의 대표, 법인•조합•권리능력 없는 사 단의 경우 법률 혹은 정관에 따라 대표로 되어있는 자가 보고와 영업 상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의무자에게 영업상의 서류에 대한 검토 및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영업 공간 및 토지 에 대한 출입을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27조제4항) 그리고, 규제행정청으로부터 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통상적인 영업시간동안에 기업 및 기업단체의 사무실 및 영업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 으로써(제127조제5항) 우리나라에서의 출입 검사와 유사한 행정조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신법은 보고 및 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수색을 허용하는 근 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색은 관할하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행 해질 수 있으며(제6항 1 문) 영장취소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항고 에 관한 절차가 준용된다. ${ }^{128)}$ 동법은 급박한 위험의 경우 영업시간 동 안 법원의 영장 없이 필요한 수색을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항 제2문) 영장이 없이 수색한 경우에 특별히 사후에 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조사자는 물품 또는 영업상의 서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제 127 조제 7 항 제 1 문). 규제행정청이 행정조사를 함에
127) 통신법상 정보제공요구에 대해서는 김성태, 통신법상의 행정조사-독일 통신법 (TKG)상 행정조사와의 비교고찰-, 행정법연구(2007년 상반기), 한국행정법학회, 179-185쪽을 토대로 하였다.
128) 김성태, 앞의 글, 181-182쪽.

있어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시간 보관하는 것 이 조사활동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의 조작, 멸실, 훼손 등의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자료를 보관하는 것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129)}$

통신법은 보고에 있어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일정한 다른 불이익 절차에서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의무를 지는 자 는 답변으로 인하여 자신 혹은 친족이 형사재판의 소추 혹은 질서위 반법에 의한 절차에 회부될 위험이 있는 질의에 대한 보고를 거부할 수 있다.(제 8 항 제 1 문) 다만, 조세범죄에 대한 절차 및 그와 관련된 조 세부과절차 그리고 정보제공의무자 또는 그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가 고의로 허위의 보고를 행한 경우는 제외된다(동항 제3문)

조사결과 규제행정청에 의한 부담의 부과, 하명 혹은 처분 등에 위 반한 경우 기업은 규제행정청에게 감정인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 조사 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제9항).

## 나. 행정조사

통신법 제 128 조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필요한 모든 조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규정은 규제기관이 행정결정을 하 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준사법적 절차에 기해 판단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증인 및 감정인에 의한 증거제시에 대 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강제적인 행위는 허용되 지 아니한다), 증거조사는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며 서면을 통한 증인 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동의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129) 김성태, 앞의 글, 182쪽.

## 다. 압수 절차

규제기관은 조사를 위한 증거자료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적물 을 압수할 수 있다(통신법 제129조). 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법관에 의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은 압수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법관에 의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관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라. 이행강제 규정

통신법상 명령사항의 이행을 위해 행정집행법에 따라 500,000 유로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 127 조 제 10 항). 통신법은 통신 법상의 규제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혹은 소송의 제기가 집행 정지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제137조) 이에 따라 통신법상의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관철을 위한 행정강제가 허용될 수 있다. ${ }^{130 \text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강제금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고의 요구등과 관련하여 행정강제의 수단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와 서류의 제출은 통상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는 점에서 통신법은 이행강제금을 강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영업공간에의 출입(제 127 조 제 5 항)에 대한 수인의무 의 확보에 있어서도 이행강제금은 적절한 강제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신법은 제 127 조의 보고•검사와 관련하여 한정된 사 항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 }^{1311}$ ) 즉, 제 1 항에서 정한 통신활 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사정 및 매출액에 대한 보고명령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에 해당하고(제 149 조 제 1 항 제 4 호
130) 김성태, 앞의 글, 183-184쪽.
131) 김성태, 앞의 글, 185쪽.
c목), 이에 대해 10,000 유로 이내의 질서 위반금이 부과된다. ${ }^{132 \text { ) }}$

## (2)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

## 가. 현장조사에 대한 조사명령과 조사개시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193조~203조는 현장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는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기 업조사라는 용어로도 불리어졌다. 법 제 193 조 이하는 현장조사 (Außenprüfung)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장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조세사정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조사의 기회에 현장조사관 은 납세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정을 확인하게 된다. 과 세관청은 현장조사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른 재량권을 가지는데, 적 법과세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자체의 합목 적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의 범위는 종목과 기간, 사실관계 차원 에서 제한될 수 있다(법 제194조).
과세관청은 현장조사의 실시 전에 납세의무자와 현장조사의 인적• 물적•시간적 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명령을 발급하게 된다(제196 조). 즉 '조사명령'을 통해서 현장조사의 범위를 확정한다. 납세의무자 는 조사명령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인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 위 내에서만 협력의무를 진다. 또한 조사명령을 통해 현장조사의 시 간적, 물적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조사명령에서 조사의 범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제193조 제1항, 제2항 제1 호)와 별도의 충분한 근거 제시가 필요한 경우(제193조 제2항 제2호) 가 구분된다.
132) 김성태, 앞의 글, 185쪽.

##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조사명령은 납세의무자의 보호를 위해 적시에 조사 전에 고지되어 야 한다(제197조 제1항). 또한 조사명령은 주가 조사주체인지를 명확 히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개시는 납세의 무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조사개시 전 적절한 시기의 고 지가 요구된다. 만약 중요한 이유를 설득할 수 있다면 조사개시를 연 기할 수 있다(제197조 제2항). 이상의 조사명령 및 이하의 조사과정은 각 단계에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 나. 조사과정

조사관은 현장조사 시 지체 없이 신분증명을 해야 하고 조사 개시를 고지해야 한다(제198조). 조사가 개시되면 납세의무자는 협력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라 조사관이 권리를 갖게 된다(제200조). 납세의무자는 과세를 위한 중요한 사실의 확인에 대하여 협력해야 하며, 정보를 제 공하고 자료를 제시,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제200조 1항). 필요한 적절 한 공간 및 작업장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제2항), 조사는 영업 시간 또는 작업시간 동안 이루어진다(제 3 항).

## 다. 종결협의 및 조사보고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결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제201조 제1항). 종결협의는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인 청문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명을 통해 의견일치의 조사종결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조사결정은 종결협의가 없 다는 이유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종결협의가 없더라도 조사확인 된 사항은 조세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현장조사의 결과는 서면에 의한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제202조). 이는 충분한 법적인 청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납세의무자가 조사결과에 대해 다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 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조사보고서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 자체에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없고，납세의무자는 조세결 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 （3）검사 및 검역에 관한 규정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위생검역 및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독일 연 방 및 각 주 법은 경찰법，영업법，건강 관련 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취 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러한 규정은 종종 감독（Überwachung） 규정의 장에서 규율된다．가령 독일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제 11 장 감독 규정이나 식품법 제7장 감독 규정에서는 감독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권한（Probenahme，의약품법 65조，식품법 제43조）， 수인 및 보고의무（Duldungs－und Mitwirkungspflicht，의약품법 66조，식 품법 제44조）에 관한 규정이 예이다．이들 규정은 한편으로는 행정조 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만，다른 한편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서의 의미를 동시 에 갖는다．

## 제 3 절 일 본

## 1．행정조사의 개념

일본의 행정법학계에서는 행정조사의 정의나 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으나，최근에는 행정조사를＂행정기관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정보수집）활동＂으로＂정보의 수 집•가공•이용•관리•개시라고 하는 정보관리행정의 제 1 단계＂로 정 의하는 학설이 유력하다133）．일본의 행정절차법 제정 당시에＂행정조 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조사가 매우

##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어 렵다는 결론을 맺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종래에는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인식해 왔으나 특히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조사 를 즉시강제에서 분리하여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어 왔다．즉，행정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은 출입검사나 보 고의 징수 등 적극적•능동적인 성격의 것과 신고나 신청 등 소극 적 • 수동적인 성격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행정조사는 적극적• 능동적 정보수집활동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134 \text { ）．}}$

## 2．행정조사의 종류

행정조사는 대상에 따라서는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는 일반적 조사 와 자료제출명령이나 출입검사와 같이 상대방이 특정되는 개별적 조 사로 구분된다．예를 들면，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조사，주택•토지 통계조사와 같은 유형은 일반적 조사이며，조사대상자의 임의적 협력 을 얻어서 실시된다．
이에 대해서 개별적 조사는 보고징수，자료제출명령과 같이 행위의 무를 부여하는 경우，출입검사나 질문，검사와 같은 조사에 대한 수인 의무 내지 대응의무를 부과하는 유형의 것이 있다．이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재조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일반 적이다．

행정조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특히 상대방의 임의적 협 력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임의조사，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하더라도 행 할 수 있는 실력 강제조사，벌칙에 의하여 담보되는 간접강제조사로

[^22]분류와 상대방에게 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부과형의 조사，행정 기관의 실행행위를 수반하는 사실행위로서의 조사라고 하는 분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35）．

## （1）임의조사와 강제조사

행정조사는 사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체 계，예를 들면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즉 강제조사와 행정조사에 응할 것인가를 사인의 임의에 맡겨둔 경우，즉 임의조사로 구분된다．

임의조사의 경우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절차적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조사대상이 되는 국 민의 입장에서 임의조사에 대해서 절차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고 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 }^{136)}$ ．

첫째，행정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간접강제조사인지 임의조사인지 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에는 임의조사임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절차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37）．왜냐하면，임의조사에 있어서 상대방 의 임의성，즉 조사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부여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목적이나 조사의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조사에 협력할 것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138）．
둘째，조사대상자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를 해당 정보에 직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동의 없이 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한다면 해당 행정조사의 법적 성격이 반드시 임의조사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의 상대방인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임의조사이지만 조사대

135）深澤龍一郎，行政調査の分類と手続，ジュリスト増刊「行政法の争点」，p． 56
136）曽和俊文，行政調査手続の整備，ジュリストNo．1304，有斐閣（2006．1．1．－15），p． 73
137）曽和俊文，앞의 논문，p． 73
138）曽和俊文，앞의 논문，p． 73

##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상이 되는 정보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 은 채로 행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조사대상인 납세자의 동 의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사로 이런 경우를 반드시 임의조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요건이 필요하며，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139）．

## （2）조사수단에 따른 구분

행정조사는 조사수단에 따라서 질문，출입검사，보고의 징수，문서제 출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140)}$ 이러한 조사수단들은 간접강제에 수반하 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보고의 징수나 자료제출의 요구는 상대방에게 작의의무를 부과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 무부과형조사 또는 행정행위 형식의 조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41）．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명령이 처분성이 없다 고 하여 취소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판결142）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게 작의의무를 부과하는 유형의 보고징수나 자료제출명령이 반드시 처분성이 있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논의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자료제출요구는 제출해야할 자료의 범위 등이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통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 나，출입검사는 대부분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전통지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결국 행정조사 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143）．

[^23]
## （3）행정영역에 따른 구분

일부 학자들은 행정조사를 정보의 수집•가공을 직접 목적으로 하 는 경우와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등 개별 행정활동의 전제가 되는 정 보의 수집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의 행정조 사가 취하고 있는 입법형식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속하는 행정활 동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결정된다고 한다144）． 예를 들어，법위반에 대한 침해적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 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감추는 상대방과 일정한 긴장관계 속에서 정 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등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가 등이 문제가 된다．과세처분의 자료를 수집하는 질문검사권，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일제검문，독점금지법위반사실의 수집을 모적으로 하는 행정조사 등이 그러한 예이다．이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라는 관점 에서 행정조사의 절차적 통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처분의 상대방 보다는 제 3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규제나 환경규제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적절한 발동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의 관점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145）．

생활보호법과 같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본인의 신청 내용의 진 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며，이 경우 요보호자의 불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 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146)}$

[^24]
## 3．행정조사의 절차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과 같이 행정조사의 기본원 칙，절차와 방법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행정절차 법에서는＂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그밖에 그 직무의 수행상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처분 및 행정지도＂를 적용제외하고 있다（일본 행정절차법 제3조제 1 항제 14 호）．행정절차법에서 행정조사를 적용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조사 가 다양한 법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147）．행정절차법 제정시에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이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된 것이 그 반증 일 것이다 148 ）．

따라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 하여 필요한 조사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행정기관이 강 제적인 수단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조사 상대방의 재산 권，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의 관점에서 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 에서 행정조사의 절차적•실체적 통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관해서는 일의적으로 논의되지 않 고 있으며，다만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주의，사전통 지，공무원의 신분증 휴대•제시 등이 논의의 내용이다．이를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신분증 휴대•제시

출입검사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조사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제시할 것이 규정되는 경우가

[^25]많다．예를 들어 도시계획법 제27조149）가 그러하다．반면 관계인의 청 구가 없더라도 항상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조사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신분증 제시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당연히 제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150 \text { ）}}$

## （2）사전통지의 필요성

개별법령에 따라서는 행정조사에 앞서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권과 관련하여＂질문검사의 필요가 있고 이것과 상대방의 사적 이익 간의 형량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한도에 그치는 한 권한 있는 세무직원의 합리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질문검사권이 재량행 위임을 밝히면서＂검사실시의 일시장소의 사전통지，조사의 이유 및 필요성의 개별적•구체적 고지도 질문검사를 하기 위한 법률상의 일 률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51）．즉 사전통지 가 없는 행정조사의 적법성을 승인하고 있다．

사전통지가 필요한가는 조사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출입검사는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사업자가 법위반사실을 은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통 지와는 친숙하지 않다고 보여진다．즉，사전통지절차가 친숙한 행정조 사와 사전통지절차에 친숙하지 않은 행정조사의 유형을 행정조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49）일본 도시계획법 제27조에서는（증명서등의 휴대）라는 제명 아래＂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
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증명서 또는 허가 증은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0）曽和俊文，앞의 논문，p． 76
151）最決 1953．7． 10 刑集 27 卷 7 号，p． 1205 ．

## 4．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자료제출명령이나 보고의 징수 등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부과형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판례에 따라서는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사실행위적 행정조사는 계속적 성질 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일본 행정 소송법상의 중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52）．그 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규정하는 다양한 입법형식에 비추 어볼 때 반드시 처분성이 가진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자의 승계문제로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즉，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후행하는 일정한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로 보여진다．그러나 판례에서는 행정조사 의 위법성이 후행하는 행정행위에 승계될 여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듯 하다 ${ }^{153)}$ ．
그리고，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특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조사의무위반의 결과로 서 공무원의 과실이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 한다．

[^26]
## 제 4 장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 제 1 절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 현항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정조사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규제개혁 차원에 서 행정조사 정비를 담당해온 국무조정실의 관련 자료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2004년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15 개 부처 소관 137 개 법률에 근거하여 총 160 개 종류의 행정조사가 운영되고 있으 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각 부처의 훈령•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사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 }^{154)}$ 행정조사는 법령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부처가 중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피조사자의 부담이 가 중되고, 행정조사의 요건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적법 절차 등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중복조사로 인한 기업활동의 애로 요소를 해소할 필요에서 기업 대상 행정조사 정비가 추진되었다. ${ }^{155)}$

「행정조사기본법」 심사보고에서 제시된 2006년 9월 당시 법률에 규 정된 부처별 행정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161 개 법률에 241 건의 행 정조사가 존재하며, 조사유형별로는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90건, 위반
154)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2쪽.
155)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1쪽.

확인을 위한 조사 71 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46 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33 건, 심사를 위한 조사 1 건으로 나타났다.156)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KIPA)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행정조사 운 영계획에 따르면 노동부, 환경부 등 25 개 부처에서 총 407 건의 행정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7)}$ 이 중에서 법령 등에 근거를 두 지 않고 시행되는 행정조사는 16 건 $(4 \%)$ 으로서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8)}$
2016년에 실시될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총 697건의 행정조 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5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57건, 관세청 23 건, 교육부 6건, 국가보훈처 3 건, 국민안천처 9 건, 국토교통부 171 건, 기상청 2 건, 기획 재정부 5 건, 농림축산식품부 49 건, 농촌진흥청 1 건, 문화체육관광부 14 건, 미래창조과학부 33 건, 방송통신위원회 25 건, 보건복지부, 21 건, 산림청 6건, 산업통상자원부 12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45 건, 여성가족 부, 18 건, 원자력안전위원회 5 건, 중소기업청 11 건, 통계청 36 건, 특허 청 4 건, 해양수산부 36 건, 행정자치부 7 건, 환경부 98 건이었다(<표 2>
156)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 8 권제 3 호, 한국비교 공법학회, 2007, 90쪽.
157) 김신•최진식,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 구원, 2013, 92-93쪽.
158) 김신 - 최진식, 앞의 보고서, 97쪽.
159)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조사 목록은 총 697 건 이나,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6년에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행정조사 건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서 누락된 행정조사가 존재하는 것(예컨대, 해 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8 조의 출입•검사 및 수거는 목록에서 빠져있음. 또한 경찰청 소관의 법률은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음)으로 보이므로 전체 건수에는 변동이 가능하다.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토 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확인을 통해 목록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자 한다.

참조). 그러나, 이 자료에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행정조사 목록만 포 함되어 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되는 행정조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 기란 쉽지 않다. 또한, 행정조사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목록에서 누락 된 것도 다수 존재하고,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 은 것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목록으로부터 2016년 한해 동안 행정조 사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행정조사에 관해 개별 법령에서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와 출입 검사 등을 한 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는 보 고와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하나의 유형의 행정조사만 이 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행정조사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 도 있고, 다수의 행정조사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었다.

## <표 2> 2016년 행정기관별 행정조사 운영 현황160)

| 번 <br> 호 | 부 처 | 행정조사 명칭 및 개수 |
| :--- | :---: | :--- |
| 1 | 고용노동부 | 개업노무사 • 노무법인에 대한 보고 • 자료제출 요구 <br> 등 57건 |
| 2 | 관세청 | 관세사회 정기보고 등 23건 |
| 3 | 교육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자료제출 요구 등 6건 |
| 4 | 국가보훈처 | 방위산업체 실태조사 등 3건 |
| 5 | 국민안전처 | 관련 사업체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 등 9건 |

160) 2016. 4. 국무조정실에 요청하여 받은 2016년 행정조사 목록을 토대로 분류 작 업한 것으로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누락된 사항을 반영한 부처별 행정조사 목 록은 후술하는 <부록>에 제시할 것이다.

| 번 호 | 부 처 | 행정조사 명칭 및 개수 |
| :---: | :---: | :---: |
| 6 | 국토교통부 |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등 171건 |
| 7 | 기상청 | 기상산업 지도검사 등 2건 |
| 8 | 기획재정부 |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 5건 |
| 9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병성감정실적 보고자료 제출 등 49건 |
| 10 | 농촌진흥청 | 농작물 생육조사 1건 |
| 11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관련사업자 실태조사 등 14건 |
| 12 | 미래창조과학부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 방하기 위한 자료 제출 등 33 건 |
| 13 | 방송통신위원회 | 경쟁상황평가자료 제출 등 25 건 |
| 14 | 보건복지부 | 감염병 실태조사 등 21건 |
| 15 |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 •품질 및 품질인증 조사 등 6건 |
| 16 | 산업통상자원부 | 공산품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12건 |
| 17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시험 • 검사기관 점검 등 45건 |
| 18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18 건 |
| 19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검사 등 5건 |
| 20 | 중소기업청 | 1 인창조기업 실태조사 등 11건 |
| 21 | 통계청 |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36건 |
| 22 | 특허청 | 무상실시권 실적 제출 등 4건 |
| 23 | 해양수산부 |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자료제출 등 36 건 |


| 번 <br> 호 | 부 처 | 행정조사 명칭 및 개수 |
| :---: | :---: | :---: |
| 24 | 행자부 |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의 위법성 검사 등 <br> 7 건 |
| 25 |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 점검 등 98건 |
| 합 <br> 계 | 25개 행정기관 | 총 697건 |

## 제 2 절 행정조사의 입법 유형

## 1. 개 관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정의하면서 행정조사의 유형을 현장조사, 자료열람, 시료채취 또는 보고 요구, 자 료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행정조사가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 등 국민 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명령하 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 서류나 장부를 열람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등 샘플을 수거 또는 채취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밖에 현장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명 문화한 규정도 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 수집을 위해 정기 적으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행정조 사를 몇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조사의 방식에 따라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질 문•열람, 시료채취, 출석•진술 요구, 현장조사, 실태조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에 관해 행정기관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과 사업주 등 조사대상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에 관한 일정한 의무를 부 과하는 규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업주에게 법령상 일정한 사항 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행정부담이 되는 행정조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무소 등 일 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질문, 열람하는 경우를 현장조사로 볼 수 있는데, 입법례에 따라서는 출입 검사 규정 외에 현장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행정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 일정한 조치의 이행을 사후관리 하거나, 지도•감독 차원 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셋째, 실체규정으로서 행정조사가 규정된 경우와 보칙 규정에서 행 정조사가 규정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주로 보칙 규정에서 행정 조사를 규정하는 경우는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조사의 형식에 따라 행정조사의 유형을 1 차적으로 분류 하여 입법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고, 제3절에서 부처별 주요 법령에서 행정조사 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2. 보 고

'보고'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기업주 등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와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의무 를 부과하는 경우로 나뉜다.

## (1) 보고 명령 또는 요구

보고 명령이나 요구를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자료 제출과 함께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 명령이나 요구의 목적은 법의 위반 여부 확인,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6.4.28.] [법률 제13898호, 2016.1.27., 일부개정]
제 18 조(감독상의 명령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 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 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하략)

제 25 조(지도•감독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 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하략)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 $\mathbf{5 1}$ 조(감독상의 조치)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
제 15 조의 5 (공단에 대한 감독 등) (2)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공단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시행 2016．7．1．］［법률 제13921호，2016．1．27．，일부개정］

제 21 조（보고 및 검사）（1）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장 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제 5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자：생산량，수입량，유지관리용 부품 확 보 현황 등
2．유지관리업자：기술인력，보수 대수，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
3．승강기 관리주체：자체점검，안전관리자，사고의 현황 등

## （2）보고의무

사업주 등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이와 같은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예컨대「산업안전보건법」 제 10 조의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와 동법 제42조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동법 제 43 조의 건강진단결과 보고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2 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 되는 안전기준 위반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어린이제품에 대한 보고 의무는 사고 등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 10 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2)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라 기록 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1)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 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 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 43 조(건강진단) (4) 건강진단기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51호, 2016.1.27., 일부개정]
제 12 조(사업자 보고의무) (1)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 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 게 된 날부터 48 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를 발생시킨 경우
3.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시행 2016.1.27.] [법률 제13851호, 2016.1.27., 일부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어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3. 자료제출

자료제출은 보고와 함께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자료제출 요 구가 규정된 입법례도 존재한다. 자료제출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목 적은 행정기관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기타 정책 수립에 필요 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치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경우가 많 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면서, 수범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 (1) 자료제출 요청 또는 요구

기업 등 국민에게 일정한 자료제출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7.28.] [법률 제13897호, 2016.1.27., 일부개정]

제 4 조의 3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5)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 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7.28.] [법률 제13897호, 2016.1.27., 일부개정]

제 4 조의 8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 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제 18 조의 4 (자료제출 요구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8 조에 따른 역학조 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시행 2016.1.27.] [법률 제13851호, 2016.1.27., 일부개정]

제 14 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 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1.] [법률 제1369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 14 조의 3 (조사•질문 등) (2) 국가보훈처장은 제 1 항에 따른 조사 또는 생 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 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1．］［법률 제13697호，2015．12．29．，일부개정］
제 74 조의 8 （자료제출 요구권 등）（1）보훈심사위원회는 제 74 조의 5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 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신청인
2．제 6 조제 3 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병무청장
4．「국민건강보험법」제 13 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0 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보험업법」제 176 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의료법」제 3 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2）자료제출의무

사업주 등에게 일정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동법 제 13 조와 제 20 조는 각각 사업주에게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과 정년제 도 운영현황을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 10 조와 제 13 조에 따르면，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동일한 서식（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1 월 31 일까지 전년도의 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7．28．］［법률 제13897호，2016．1．27．，일부개정］

제 13 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1）제 12 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7．28．］［법률 제13897호，2016．1．27．，일부개정］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출입 검사 등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 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해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는＇현장조사＇라는 용어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출입하여 장부•서류 나 물건을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필요한 물품을 수거하 거나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필요한 자료를 영치할 수도 있다．즉， 물품에 대한 수거와 시료채취，자료의 영치 등은 출입 검사 및 질문 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보고나 서류 제출에 비해서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인 국민에게 주거권이나 재산 권，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더욱 크므로 이 경우 에는 반드시 법률에 조사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보고나 자료제출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승강 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3항이 그것이다．출입 검사 등의 규정에

는 사전 통지 의무와 조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함께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7.1.] [법률 제1369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 14 조의 3 (조사•질문 등) (1)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 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 수당수급자(제 14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 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 1 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 1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 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
제 21 조(보고 및 검사) (3)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제 3 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 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
(5) 제3항에 따라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 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 117 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1)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118 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1)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 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 117 조제 2 항을 준용한다.

## 5. 현장조사

개별 법령 중에 출입 검사 외에 '현장조사'의 근거를 직접 명시한 입법례도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고받은 사항이나 자료제출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 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신청에 대해서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 조와「재해구호법」 제 10 조에서도 각각 현장조 사를 규정하고 있다．현장조사는 법률에 따라서는＇현지조사＇로 명명 되어 있기도 한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해외제조업소에 대 한 현지실사를 규정하고 있다．그밖에 전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8 조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 동법 시행규칙 제 30 조제 1 항에서는＇현 지조사＇로 표현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규정한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 및 관계공무원의 증표제 시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8．］［법률 제13750호，2016．1．7．，일부개정］
제 22 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1）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 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 2016．9．23．］［법률 제14084호，2016．3．22．，일부개정］

제 94 조（신고 등）（1）공단은 사용자，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4호, 2016.3.22., 일부개정]
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 - 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7조(보고와 검사)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5)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 여주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 14 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1) 공단은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신청서 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 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 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 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 하는 사항

(2) 제 1 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단 또는 제 1 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 치도•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 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 16 조(현장조사)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 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 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제 15 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 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 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 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 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 문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 1 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해구호법 <br> [시행 2016.7.8.] [법률 제13753호, 2016.1.7., 일부개정]

제 10 조(현장조사) (1) 구호기관은 제9조제 1 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 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시행 2016.2.4.] [법률 제13201호, 2015.2.3., 제정]

제 6 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 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6. 실태조사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수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효 율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조사의 하 나로 볼 수 있다. 아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태조사는 정기 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며,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일정 범위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자료제 출이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법률에 여러개의 실태조사가 규정되어 있거나, 부처간 실태조사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 는 경우에는 조사를 합동으로 진행하거나, 중복조사는 생략하는 등 조 사상대방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 ［시행 2016．7．28．］［법률 제13877호，2016．1．27．，일부개정］

제 7 조（실태조사）（1）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5）제 1 항•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br> ［시행 2016．8．4．］［법률 제14024호，2016．2．3．，일부개정］

제26조의2（실태조사 등）（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26 조에 따른 종합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 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 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1．25．］［법률 제13433호，2015．7．24．，타법개정］

제 6 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의 군수는 제외한다．이하＂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등의 현황
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영상 정보처리기기＂라 한다），보안등，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특별시장등은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 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 3 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 분석

## 1．분석 기준

## （1）국무조정실의 행정조사 정비기준

2012년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 사 정비의 기준은 5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불요불급한 행정조사를 폐 지하고，행정조사의 기준을 완화하며，공동조사 실시 및 대상 발굴을

통해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행정조사 근거 를 규정한 개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161)
<표 3> 행정조사의 정비 기준 ${ }^{162)}$

| 기 준 | 내 용 |
| :---: | :---: |
|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 $\bigcirc$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행정조사 만 존치시키고, 실효성이 상실된 행정조사 폐지 |
| 행정조사 기준 완화 | 행정조사 대상 업종별 성수기 등을 피해 조사 실시, 행정조사의 횟수나 주기 조정 <br>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범위 축소 <br> 기술발전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현장 조사 및 서면에 의한 조사 등을 온라인 등에 의 한 조사로 방법 개선 |
| 공동조사 실시 및 대상 발굴 | 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 조사 대상 행정조사 자체 발굴 <br> $\bigcirc$ 동일 - 유사사항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조사 실시 |
| 자율관리체제 전환 | 행정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조사• 신고할 경우 행정조사 실시로 인정하고, 이에 대 한 행정조사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 행정조사 근거법령 정비 | 행정조사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도 록 정비하고, 법률의 명확한 위임없는 편의적이 고 자의적인 행정조사 금지 <br> 개별 법령의 행정조사 근거규정은 행정조사기본 법의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

161) 국무조정실, 2012 규제개혁백서, 2013, 706-707쪽.
162) 국무조정실, 2012 규제개혁백서, 2013, 706-707쪽 - 김신 - 최진식, 행정부담 감 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88쪽 <표3-3>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행정조사 제도 자체의 개선 사항 외에 행정조사 근거 법령 정비 기준으로서 행정조사의 근거를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하 도록 정비하고，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행정조사기본법 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2）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분석 기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은 개별 법령에 다양하 게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방법과 절차 등의 공통사항 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따라서，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 은 개별 법령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방법，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야 하고，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 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조사자는 조사권한을 남용해 서는 안되며，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름으로써 형평성 위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또 한，조사대상자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부처간， 한 기관내 다른 부서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내용적으로 중복된 조 사는 금지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지 사후에 처벌을 위해 활 용되어서는 안되고，조사를 행하는 공무원 등은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의 누설이 금지되고，이를 조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조사는 정기적 조사가 원칙이므로，수시조사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행정조사는 그 형식을 불문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국 민에게 일정한 부담이나 기본권 제한 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적법절

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즉,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목 적, 내용, 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요구서로 알려야 하고, 영 업소나 타인의 주거 등에 출입할 때에는 별도로 권한을 증명하는 증 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조사의 결과가 확정된 후 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 청 절차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행정조사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이나 훈령으로 행정조사를 실 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현장조사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 거해야 하므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위임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규칙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자는 조사권한을 남용해 서는 안되고, 조사대상자인 기업 등 국민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의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되 도록 지양해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므로 선정의 기준을 명시 하거나, 선정위원회 등을 두어서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기업이나 사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행정조사는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 조사는 법률에서 규정 한 경우 등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 고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수시 조사를 규정했다면, 이것은 전술한 기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시 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 사전통 지, 증표 등 제시, 조사결과 통보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 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은 '사전통지’에 관한 문제이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석이나 진술 요구,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 일 전까 지 조사의 목적, 범위, 내용, 시기, 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요구서를 조 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는 행정조사의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미리" 알려야 한 다고 규정된 경우도 적지 않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 거나 사전 통지를 기다려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사전통지의무를 규 정한 취지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입 검사나 현장조사시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조사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개별 법령에 반영되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관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등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 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분석 내용

## (1) 조사의 법적 근거 유무

## 가. 입법례

(1) 법률에 규정한 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 10 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 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 38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 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제 22 조(출입•검사•수거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 •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 식품위생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제17조(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역학조사) (1)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 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에 규정한 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2016.9.23., 일부개정]
제 20 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1)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 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 의 원장은 제 12 조, 제 19 조 및 법 제 96 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 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2016.9.23., 일부개정]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 2015.8.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3호, 2015.8.11., 일부개정]

제 6 조(요양급여비용 내역의 현지확인) (1)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 2 조 및 제 5 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 12 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기관현황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내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통보서와 심사평가원 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3) 법령이 아닌 훈령/고시 등에 규정한 예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2.30.] [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12.30., 일부개정]
제 42 조(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 (1) 보세공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 193 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신고(별지 제 23 호 서식)
2. 영 제 190 조에 따른 업무내용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 (별지 제24호 서식)
3. 영 제 191 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에 관한 사항 승인신청(별지 제 25 호 서식)
4. 법 제 179 조제 2 항에 따른 보고 및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보세공장) 승계신고(별지 제2-2호 서식) ('05.1. 신설)
5. 기타 설치•운영특허 내용중 변경사항 신고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br> [시행 2015.12.30.] [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12.30., 일부개정]

(2)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내용을 화물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1. 개정)

1. 법 제 174 조 제 1 항 및 영 제 188 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 허 및 기간갱신
2. 법 제 178 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취소
3. 법 제 179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상실('05.1. 개정)
4. 영 제194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승계 ('05.1. 신설)
5. 영 제 193 조에 따른 보세공장의 폐업
6. 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따른 설치 - 운영특허의 변경사항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 [시행 2016.8.12.] [관세청고시 제2016-47호, 2016.8.12., 일부개정]

제 5 조(운영인의 의무) (1) ~ (7) (생 략)
(8)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 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 (별지 제7호 및 제7-1호에서 제7-5호 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운영인은 다음 달 7 일까지 월별 해당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 원과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현황 및 변경사항(별지 제7-6호 서식)에 대 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 의 사용인으로 본다.

## 제 32 조(세관장의 업무감독) (1) ~ (2) (생 략)

(3) 세관장은 제 2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 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 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 ［시행 2016．8．12．］［관세청고시 제2016－47호，2016．8．12．，일부개정］

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 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 37 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 며（이하＂재고조사＂라 한다）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 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다만，보세판매장 설 치•운영 특허 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 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5）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조사반을 지 명하고 7 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필요한 경우 법 제 266 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 영과 관련한 계약서，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 제 11 조，제 17 조，제 18 조 및 제 22 조를 준용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행정조사기본법」 제 3 조제 2 항제 5 호에 관한 사항
2．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검 토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법령등에서＂행정조 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문언상으로는 훈령／고시도 행정조사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그러나，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

사대상자의 주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이나 수거 등을 하는 것이 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며，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그 유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보고 의무，출입 검 사，현장조사，실태조사 등 다양하며，조사의 근거는 법률에 두면서 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가 많 다．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같이 법률에 위임을 받지 않 고 시행규칙에서 현장조사의 근거를 규정한 경우도 있다．즉，동 시행 규칙 제 20 조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로 이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 263 조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료제출，보고，현장조사 등의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시행 2016．9．30．］［법률 제14127호，2016．3．29．，타법개정］
제 263 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lrcorner$ 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 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세관공무원으로 하여 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포괄적인 행정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관세청 고시를 통해 보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보세 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보세공장 특허변경 사항 보고의무 를 규정하고 있으나，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마찬가지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세관장에게 보세판매장 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다시 말 해서，법률에서 포괄적인 행정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구체적인 사항 에 대해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고시에서 행정조사의 근거 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2）조사의 목적과 내용의 구체성 여부

## 가．입법례

（1）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거의 규정되지 않은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 2016．8．4．］［법률 제14022호，2016．2．3．，일부개정］
제 70 조（지도•감독 등）（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8．4．］［법률 제14024호，2016．2．3．，일부개정］
제 21 조의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1）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4호, 2016.2.3., 일부개정]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 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매년 1 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
제 19 조(출입•검사•수거 등)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 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 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2)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 4 조(소방특별조사)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 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 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 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8．12．］［법률 제13805호，2016．1．19．，타법개정］

（이하＂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다만，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2）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방화시 설，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소방기본법」 제 13 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 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재난예측정보，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재 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재난•재해，그 밖 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검 토

다수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지도•감독이란 제목으로 보고나 자 료제출 요구，출입 검사 등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이나 내용이 구체적이 라기보다는＂감독상 필요한 경우에＂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조사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어떠한 내용에 관해서 조 사를 수행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식품위생법」 제 70 조와 같이 규정된 조항들이 다른 법령에서도 다수 존재한다．「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도＂감독상 필요한 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학교급식법」 제19조에서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 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에，「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21 조의2 제2항에서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매년 1 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감독상 필요한 경우＂또는＂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조사권 발동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사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163)}$ 따라서，조사대상자의 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조사권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 근거 법령에 그 목적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164)}$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 1 항에서도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다른 목 적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 로，조사 목적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취지 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동법 제4조에 따르면，국민안전처 장관，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

[^27]지역，관계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소방 대상물에 화재，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 항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 반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될 것인지에 관 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특별조사 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165）「철도안전법」 제73조（보고 및 검사）에서도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 할 수 있는 사유를 제 1 호부터 제 10 호까지 열거하고 있다．이와 같이， 조사의 목적 또는 사유，조사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5）시행령 제 7 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소방 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다만，소방특별조 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법 제 10 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 10 조의 2 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법 제 20 조 및 제 24 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법 제 20 조제 6 항제 1 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소방기본법」 제 12 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소방기본법」 제 15 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 장－취급에 관한 사항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 조부터 제 13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위험물 안전관리법」제 5 조•제6조•제 14 조•제 15 조 및 제 18 조에 따른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9．14．］

## (3) 조사대상자 기준 및 절차 규정 유무

## 가. 입법례

(1)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7.28.] [법률 제13832호, 2016.1.27., 일부개정]

제 15 조(감독) (1)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 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6호, 2016.3.29., 일부개정]
제 81 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1)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 식품위생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제 19 조의 4 (검사명령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 식품위생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 8 조에 따른 국외시험 •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 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2. 삭제 $<2015.2 .3 .>$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 40 조(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 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 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 4 조(소방특별조사) (3)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 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8．12．］［법률 제13805호，2016．1．19．，타법개정］

선정할 수 있다．
（7）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 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검 토

조사를 받게 되는 조사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법례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사격 및 사격장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 조제 1 항에서는 허가관 청은＂필요한 경우에＂＂사격장의 시설，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 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동 조문에서 검사나 질문의 대상이 되는 자가 사격장의 소유 자인지，운영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조사대상자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다．「출입국관리법」제 81 조제 1 항，「식품위생법」 제 19 조의 4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를 한정적 으로 열거함으로써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자의성을 차단하고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 2 항과 제 8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조사의 대상을 선정해야 하므로 조 사대상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화 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 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조사의 주기 명시 여부

## 가. 입법례

(1) 정기조사를 규정한 경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4024호, 2016.2.3., 일부개정]

제 26 조의 2 (실태조사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26 조에 따른 종합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 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 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2호, 2015.12.29., 일부개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1)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자의 사망 - 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 2 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 지 않은 입법례도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
제 7 조(실태조사)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

(2)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5) 제 1 항•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시조사를 법률에 규정한 경우

## 교통안전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88호, 2016.1.19., 일부개정]
제 33 조(교통안전점검) (1)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4 조 및 제 36 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 등에 대 하여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교통안전점검의 실 시 시기를 정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분야•대상과 분야별•대상별 점검 항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시조사를 하위법령에 규정한 경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3.31.] [총리령 제1268호, 2016.3.31., 타법개정]
제 43 조(출입•검사•수거 등) (1) 법 제 25 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 입•검사•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총리령 제1313호, 2016.8.4., 일부개정]
제 19 조(출입•검사•수거 등) (1) 법 제 22 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 시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타법개정]
제 8 조(출입•검사 등) (1) 영 제 14 조제 1 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 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영양관 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 2 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 1 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 회 이상

## 나．검 토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법령 등에서 조사의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주기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많으나，「석면안전관 리법」 제7조와 같이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도 그 주기를 명시하지 않 은 경우가 있다．동조에서 실태조사는＂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 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실시하는 것이므로，기본계획과 시행계 획 수립 주기와 맞추어 조사의 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횟수를 줄이 고，주기를 되도록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조사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행정조사기본법은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각호에서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 는 경우를＂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또는＂법령 등 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 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실시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조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다만，이러한 경우에도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교통안전법」 제 33 조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수입식품안 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수시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적어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 (5) 조사절차의 적법성 여부

## 가. 입법례

(1) 사전통지의무 관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99호, 2016.1.19., 일부개정]
제 33 조의 2 (실태점검 등) (3)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 일 전 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 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r>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 4 조의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 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 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

제 40 조(보고 및 검사) (2) 제 1 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 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6호, 2016.3.29., 일부개정]
제 81 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1)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허위초청 등에 의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중개하 는 자 또는 그 업소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 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4)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4호, 2016.3.22., 일부개정]

제 97 조(보고와 검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 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 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 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 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5)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 여주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 14 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1) 공단은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신청서 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 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 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 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하는 사항
(2) 제 1 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증표제시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제 74 조의 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2) 제 1 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61조(보고 및 검사) (3) 제1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 나. 검 토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한 법령에는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서 에 의해 사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출입 검사나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사전통지에 관해 규정한 입법례가 대부분이며, 이때에는 증표제시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통지를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까지라고 규정한 입법례도 있는 반면에，단순히＇미리＇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입법례가 다수이다．조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7일 전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 괄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요양기관이 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166）에 있어서，법령상에는 조사의 사유나 기간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대신，보건복지부의「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서 현지조사 진행시 미리 통보하도록 하 는 규정이 존재하나，이 지침은 그 효력이 내부관계자에게만 미치는 한계가 있다．${ }^{167)}$ 또한，이 지침에 현지조사 진행시 조사사유나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미리 통보하 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조사의 분위기가 매우 강압적이고 처벌 중심이고，조사대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168)}$ 현행 지침에서는 증 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요양기관 조사관련 통보제도 등을 보완하여 현지조사의 내 용，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조 사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조사 진행 도중 조사기간을 확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169)}$ 최근에는 안산시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인이 목숨을

166）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 해 요양기관이 행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인 요양기관에 출장하여 확인•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김계현•김한나，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 찰，고려법학 제65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12，70쪽．
167）김계현•김한나，의료기관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의료정책연구 소，2011，79쪽．
168）＂의료계，복지부 현지조사 개선에＇회의적＇＂의학신문 2016．8． 16 기사 참조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pk＝607898）（2016．10． 31 최종 방문）
169）김계현－김한나，앞의 보고서（주 167），92－94쪽．

끓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지침의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 다.170)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결정에서 "현지조사의 특성상 미리 통지 할 경우 한의원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 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실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것 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171)}$

개별 법령에서 출입 검사나 현장조사를 규정한 경우에는 대부분 관 계 공무원에게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대상자에게 내보 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례에 따라서는 증표 외 에도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6) 기타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 가. 입법례

(1) 조사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6호, 2016.3.29., 일부개정]
제 78 조(관계 기관의 협조) (4)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2)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없음
170) "복지부 '강압 논란'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 개정", SBS뉴스 2016. 8. 21 기사 참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43352\&plink=COPYPASTE\&coope $\mathrm{r}=$ SBSNEWSEND) (2016. 10. 31 최종 방문)
171) "현지조사 거부한 한의원 1년 업무정지 정당", 인터넷의협신문 2016. 9. 23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30) (2016. 10. 31 최종 방문)

## 나．검 토

행정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나 자료는 행정기관에 의해 보관• 처리•관리되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나，정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이용된다．${ }^{172)}$ 그런데，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 들은 수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정보의 부당한 유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게 될 경우 정보의 왜곡이나 부당한 오남용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높다．${ }^{173)}$ 따라서，행정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사생활의 자유와 그 보호 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보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74)}$ 이러한 취지에서 당초 「행정조사기본법（안）」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었다．${ }^{175)}$ 그러나，법안검토과 정에서 삭제되어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대신에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제6항에 행정조사로 취득한 정보 를 조사목적 외 이용 금지 및 타인에게 제공 금지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그러나，이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보유에 있어 서 정보의 분실이나 왜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따라서，「출 입국관리법」 제78조제4항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는 규정 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8]그밖에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조사기 본법 제 21 조에서는 사전통지된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만 보장되 어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된 후 통지받은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제 5 장 행정조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제 1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 1．「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은 다른 나라 에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동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교적 국민의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절차의 적 법성이 확보되며 행정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행정조사기본법은 제정 초기부터 적용제외 범위 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그리고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개인정 보에 관한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었다는 점，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제도 등 권리구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76)}$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행정조사기본법은 다양한 행정조사의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즉，기본법에는 행정조 사의 유형으로 보고•자료제출 요구，출석•진술 요구，현장조사，문 서열람，시료채취를 들고 있으나，개별 법령에서는 이외에도 실태조 사，출입 검사，점검 등이 규정되어 있다．조사의 유형별로 조사절차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한다．
둘째，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가 폭 넓게 규정되어 있다．예컨대，조사의 주기에 관하여 수시조사가 인정

[^29]되는 예외가 제7호 각호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정기조사보다 수 시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시조사 의 사유로서 들고 있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는 자칫 수시조사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견해도 있다. ${ }^{177)}$

셋째, 제 17 조의 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해서도 조사개시 7 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사전통 지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규정과 조 사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조사 시기를 연기한 경우에 영업 등 재산 상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법 제 22 조제1항에 의하면 조사원은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 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사전통지 및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제 4 조제 3 항과 제 14 조, 제 15 조에서는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부처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적인 보고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행정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동조사 사항의 발굴이 그리 활발 하지 않다. 기본법에서는 공동조사 실시에 대해 조사대상자에게 신청 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 2．「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 （1）행정조사 유형별 조사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보완

「행정조사기본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행정조사의 유형별로 조 사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행정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행정조 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그러 나 현행의 규정 체계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제 18 조에 따른 조사의 연기 신청，제 21 조에 따른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제 22 조에 따른 조사 원 교체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조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조사 로 인한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1）출석•진술 요구시 출석일시의 변경 신청 거부 제한

제9조에서는 출석•진술요구를 요구하는 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 록 하고 있으며，조사대상자는 출석일시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 범위 안에서 그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출석일시의 변경 신청이 허용 될 것인가는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출석일시의 변 경신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 경신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제 9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9조（출석•진술 요구）（1）（생 략） <br> （2）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 | 제 9 조（출석•진술 요구）（1）（생 략） <br> （2）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 | 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 |
| 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 | 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 |
| 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 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
|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
|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 |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출 |
| 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 석일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
|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 출석일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행 |
| 수 있다. (단서 신설) | 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2) 보고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다음으로 제 10 조에서는 보고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서 각각 보고요구서의 발송과 자료제출요구서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대상자는 제 17 조에 따른 의견제출 이외에 해당 보고요구나 자료제출요구의 부당성이나 위법성을 다툴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보고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조사대상자가 보고요 구나 자료제출요구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이나 제출서류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 10 조에 제 3 항과 제 4 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그러하다.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0 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 제 10 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
| (1) ~ (2) (생략) | (1) $\sim$ (2) (생략) |
| <신설> | (3) 제 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


| 현 행 | 개정안 |
| :---: | :---: |
|  | 요구서 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받 은 조사대상자는 해당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이 법에 따 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보 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
| <신 설> | (4) 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에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이 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중 지할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

3) 시료채취에 대한 시료 소유자 등의 확인 또는 입증방법 규정

제 12 조의 시료채취의 경우에는 채취의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그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방법과 채취일시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확인을 받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물 론 시료채취를 하는 목적이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기준의 위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력 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법령상 기준 위반이 명확하여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입 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비디오촬영이나 제 3 자인 전문가의 동

행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2조(시료채취) (1) (생 략) | 제12조(시료채취) (1) (생 략) |
| (2) "(3)으로 조항 이동" | (2) 조사원은 시료채취를 한 때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 터 시료채취의 일시, 방법,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확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전자기기를 통해서 시료채취 과 정을 녹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 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 (2) 수시조사의 예외 규정의 정비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각호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규 정되어 있다. 법률에 수시조사가 직접 규정된 경우(제 1 호) 외에도 법 령 등의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경우(제 2 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 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제3호),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제4호),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 5 호)가 그것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 제 3 조는 "조사대상자의 법 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사유들 중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는 결국 법령위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세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 5 호에 따라 규정된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 정도 법령등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재량 권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간결하고 명 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7 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 | 제 7 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 |
| 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 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
|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 |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 |
|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 |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 |
|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 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
| 있다. | 있다. |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 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 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 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6.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7.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거나,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 원이 접수된 경우
8.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3) 사전통지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규정화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위법한 행정조사에 관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법의 특성상 벌칙이나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별 법령에도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벌칙이 나 과태료 규정이 존재할 뿐, 행정기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절차나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 정조사에 근거해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178)}$

한편, 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조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조사대상자에게 영업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시료채취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는데, 사전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 17 조에 제 3 항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통지된 출석요구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위반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1) 행정조 | 제 17 조(조사의 사전통지) (1) 행정조 |
| 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 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
| 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 | 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 |
| 서, 제 10 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 | 서, 제 10 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 |
| 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 료제출요구서 및 제 11 조에 따른 |

178) 조사의 위법이 바로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소극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조사의 위 법이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만든다는 적극설과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중대하게 위 반한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절충설 등으로 나뉜다. 자 세한 내용은 김영조, 앞의 글, 110-111쪽 참조.

| 현 행 | 개정안 |
| :---: | :---: |
| 현장출입조사서（이하＂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 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 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 할 수 있다． <br> 1．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 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 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br> 2．「통계법」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 하는 경우 <br> 3．제 5 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 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 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br> （2）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 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현장출입조사서（이하＂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 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 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 할 수 있다． <br> 1．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 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 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br> 2．「통계법」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 하는 경우 <br> 3．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 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 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br> （2）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 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r> （3）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 라 통지된 출석요구서 등에 기재 된 사항에 위반함으로써 조사대 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


| 현 행 | 개정안 |
| :--- | :--- |
|  | 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br> 한다. |

## (4) 공동조사, 중복조사 제한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보완

「행정조사기본법」 제 15 조에서는 중복조사의 제한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을 살펴보면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 시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일 조사대상자 를 재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에서는 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가 중복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행정기관이 동일 사 안에 대해서 동일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는 사례보다는 복 수의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행 정조사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행정기관의 장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중복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것은 유 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일 지라도 근거법령이 각각 다르거나 복합규제 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중복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행정조사의 실시가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별사안에 대한 행정조사 계획이 관련 부처의 관련 부서에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어느 기관이 어떤 내용 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지의 정보가 최소한 관련 기관의 관계 부서 에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조사를 촉진하도록 하고, 중복조사를 회 피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 14 조에서는 공동조사의 요건과 조사대상자의 공동조사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다．다만，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공동 조사신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실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오히려 행정기관의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 여진다．공동조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복조사의 제한에 관한 제 15 조를 하나의 행정기관이 동일 사안 동일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재조사 를 하는 경우와 복수의 행정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로 나누고 후자에 대해 서는 조사실시계획 수립시에 관계 부처（부서）에의 공동조사 요청 또는 의견 조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현 행 | 개정안 |
| :---: | :---: |
| ＜신 설＞ | 제 15 조의 2 （조사계획 등 정보의 공 유와 공동조사의 촉진）（1）행정 조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 16 조에 따른 개별조사계 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유사 또는 동일한 사안과 동일한 조사대상 자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거나 개별조사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 어야 한다． <br> （2）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 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하 고자 하는 사안이 유사 또는 동일 하고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동조 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 2 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1．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 규정의 문제점

## （1）행정조사기본법과의 관계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동법 제 3 조제 1 항에 의하면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따라서，동법에 규정된 조사의 기본원칙과 조사 절차，조사대상자의 권리구제 등은 개별 법 령에 규정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서，개별 법령에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 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행정조사의 원칙，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실시 근거만 규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행정조사기본 법에 규정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행정조 사의 근거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특히 개인이나 기업 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출입 검사 등 현장조사의 경우 에는 그 근거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행정조사로 인한 기업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조사 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며，행정조사로 인한 권리 침해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조사기본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특례 등을 개별 법령 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동시에 개별 법령 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통제 등의 규정 내용과 배치되 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의 포괄성, 불명확성

현행 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할 때 조사대상 사무를 특정하 지 않거나 조사목적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과 같이 포괄적이 고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조사대상 사무의 불특정이나 조사목적의 포괄성•추상성은 피조사자의 예측가 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되도록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조사의 내용 등에 대해 법령에서 되도 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 (3) 조사 내용의 중복성

2015년 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 3곳 중 1 곳은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와 관련 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 }^{179)}$ 이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 건수는 평균 27.6건이며 건당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이었고,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41.1\%)으로 나타 났으며 $\triangle$ 과다한 제출서류(28.4\%) $\triangle$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 으로 확인되었다. ${ }^{180)}$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자료제출이나 보고요구의 경우에 동일 - 유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그 절차가 불필요 하거나 번거로운 점 등이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31]조사내용의 중복성을 개선하고 자료제출이나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합 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권리구제 미흡

행정조사기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법령에서도 위법한 행정조 사로 인한 권리 구제에 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법령 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만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이 존재할 뿐,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조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행정조사의 유형 가운데 보고나 자료제출보다 출입 검사 등 현지 조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입 검사 등의 요 건을 강화하고, 타인의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승낙을 얻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행정조사에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개별 법령에서의 행정조사 규정 개선방안

## (1) 조사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개별법령의 보칙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보고의 징수나 자료제출요구 등을 규정하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선 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대상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개별 법령에서는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징수하거 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 사무 나 자료의 종류 등을 특정함이 없이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사례가 대 부분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 목적 아래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 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부 법령에서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조 사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대 상사무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0 조（자료의 제출 등）（1）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제 21 조부터 제 24 조까지，제 24 조의 2 및 제 25 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삭 제 $<2010.1 .27 .>$
3．제 32 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3）＂생 략＂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과 어떤 경우 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정적，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 조（소방특별조사）（1）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 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 는지，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 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다만，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개정 2014．11．19．＞
（2）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방화시 설，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 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재난예측정보，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재 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재난•재해，그 밖 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 （2）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 준수

행정조사에 관한 개별 법령을 검토한 결과，대부분의 법령에서 행정 조사 실시의 근거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드물었다．이에 관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이 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이 법의 기본원칙，방법 및 절차 등이 적 용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행정조사기 본법」 제 9 조부터 제 13 조까지에 걸쳐서 행정조사의 유형별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절차와 방식 을 규정할 때에는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

조사기본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즉，개별법령에서는 행정조사의 근 거와 목적，조사대상 사무를 규정하고，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행정 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13조에 걸쳐서 규정되어 있는 유형에 따라 서 해당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4 조의 2 ，제 4 조의 3 의 규정이 그 대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시조사의 법적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변경하고 사전통 지나 증표제시 의무와 같은 기본법상의 원칙을 달리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 사전통지 의무，출입 검사 또 는 현장조사시에는 증표 제시 이외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별 법령에 기본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 외에 도 개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는 규 정을 두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실제로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다수의 법률에서 2016년에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법령명 | 규정 내용 |
| :---: | :---: |
| 의료급여법 | 제32조（보고 및 검사）（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br> 또는 조사의 내용•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br>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 <br> 는 바를 따른다．＜신설 2016．2．3．＞ |
|  | 제39조의 11 （조사 등）（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br> 또는 질문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 <br> 하닌복지법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
|  |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9．＞ |


| 법령명 | 규정 내용 |
| :---: |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 7 조（수급자격의 조사）（6）제 1 항에 따른 조사의 내 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 다．＜신설 2016．2．3．＞ |
| 사회서비스 이용 <br> 및 이용권 관리에 <br> 관한 법률 | 제 10 조（신청에 따른 조사）（8）제 1 항에 따른 조사의 절 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 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
| 영유아보육법 | 제 34 조의 5 （조사•질문）（7）제 1 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 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 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2．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2 조（신청에 의한 조사）（9）제 1 항에 따른 조사의 내 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 다．＜신설 2016．2．3．＞ |
| 국민연금법 | 제 122 조（조사•질문 등）（3）제 1 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 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 는 사항을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12．29．＞ |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제61조（보고 및 검사）（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 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신설 2015．12．29．＞ |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9 조（지도•감독 등）（4）제 2 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신설 2016．2．3．＞ |


| 법령명 | 규정 내용 |
| :---: | :---: |
| 모자보건법 | 제 15 조의 7 （보고•출입•검사 등）（3）제 1 항에 따른 보 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 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2．＞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15 조（보고와 검사 등）（3）소속 공무원이 제 1 항에 따 라 업무 상황，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방 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5．29．＞ |
| 약사법 | 제68조의 12 （약물역학조사관）（5）제 3 항에 따른 조사 또 는 질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으 법 또는 약물 역학조사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12．29．＞ <br> 제69조（보고와 검사 등）（4）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검사 또 는 질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 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12．29．＞ <br> 제 86 조의 6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6）제 3 항에 따라 문 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하려는 경우 그 절 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 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 르면，행정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은＂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조

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자 와 공급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는 것＂이라고 한다．${ }^{181)}$

## （3）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이에 관해서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 도 있고，판례의 태도도 일관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일부 입 법례 중에서 행정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나 주거에 출입할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 있다．또한，이러한 출입 검사 등을 통해서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에 관해 배상 또는 보상 규정을 둔 입법례도 존재하므로，이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2]
## 제 6 장 결 론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거나 법령 등 위 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일반적인 지도•감독 차원에서 실시 하는 각종의 조사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이나 국민 등에게 행정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절차에서 헌법상, 법률상 보 장된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 절차의 위 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 정행위의 효력까지 문제될 수 있다.
종래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자의적, 강압적, 수시로 행해지 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유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기관의 잦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 고, 행정조사의 목적이나 대상,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조사대 상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조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조 사대상자가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서 행정조사는 기업 등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했다. 한편, 행정조사는 부처별로 소관 법령이나 지침, 고시 등에 의 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행정조사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 중복적 조 사가 실시됨으로써 조사의 비효율성과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의 관점 에서 행정조사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2007년 다양한 행정조사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이 행정조 사에 관한 기본법이다보니,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 상위법으

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법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개별 행정조사의 유형과 특 성이 매우 다양하므로，일률적으로 적용을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행정 조사기본법」에 규정된 조사의 기본원칙과 방법，절차 등은 개별 법령 에도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 제 1 절 행정조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서 조사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공동조사 및 중복 조사 금지의 원칙，사전예방적 조사의 원칙，비밀누설금지의 원칙，정 기조사 실시의 원칙 등이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증표제시 의무，결과통보 의무 등도 함께 규정되 어 있다．이로부터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 법령의 규정들 을 다음의 몇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구 분 | 내 용 |
| :---: | :--- |
| 분석기준 1 | 조사의 법적 근거 유무 <br> $\Rightarrow$ 행정조사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 분석기준 2 | 조사의 목적과 내용의 구체성 여부 <br>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br> 있는가？ |
| 분석기준 3 |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 유무 <br> $\Rightarrow$ 조사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조사대상자 성 <br> 되어 있언가？거 |


| 구 분 | 내 용 |
| :---: | :--- |
| 분석기준 4 | 조사의 주기 명시 여부 <br> 수시조사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가? 예외적 허 <br> 용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 분석기준 5 | 조사절차의 적법성 여부 <br> $\Rightarrow$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br> 에 부합하는가? |
| 분석기준 6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br> $\Rightarrow$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는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보고의무, 출입 검 사, 현장조사, 실태조사, 점검 등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이 실체적 규정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보칙에 일반적인 지 도•감독의 차원에서 규정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6 가 지 분석 기준에 따라 개별 법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대부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나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대부분 법률 이나 하위법령에라도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 정된 다수의 고시에 행정조사의 근거가 규정된 경우가 더러 있었다. 특히, 출입검사나 행정조사는 개인의 주거나 영업소에 출입 또는 방 문하여 서류 검사나 질문 등을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현장조사의 근거를 규정한 예도 있었다. 따라서, 훈령/ 고시에 근거하거나 아예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모두 법령에 두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여부에 관해서 행 정조사기본법의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아직 까지 많은 개별 법령에서 조사의 목적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도 더러 있었다.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포 괄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권의 남용의 우려가 있 으므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별 법 령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입법례도 상당수 발견되어서 그러한 규정들을 모 델로 하여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 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범위 를 명확하게 규정한 입법례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세스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므 로, 이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 는 절차를 둠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사의 주기와 관련하여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조사는 예 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령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한 경우 에는 기본법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를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수 시조사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사의 절차와 관련해서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를 실시하 려고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 방법, 시간, 관련 법령 등을 명

시한 조사 요구서로 조사개시 7 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개별 법령을 검토한 결과，사전 통지의무를 아예 규정하지 않은 것도 다수 존재하고，사전 통지를 규정했으나 단순히 ＇미리＇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었으며，조사개시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례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의 목적과 긴급성 등에 따라서는 조사개시 7 일전 통지라는 요건 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모든 행정 조사에 7일 전 통지의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조사대상자는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조사의 계획 과 범위，내용，위반시 제재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모 든 법령에 되도록 사전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증표 제시의무는 출입검사 또는 현장조사를 규정한 입법례에서 거의 빠지 지 않고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단순히 증표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한 관계 서류도 함께 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절차 와 방법에 관해서는 되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각 규정을 기본법에 맞게 전부 수정하는 방법 외에도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연 기신청，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 몇가지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개인 정보의 보호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따라서，기본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거나，개별 법령에 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도출한 몇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개 별 법령을 분석，검토한 결과 아직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가

개별 법령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서 실무에서도 그 절 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행정조사를 통해서 기업이나 국민은 보고나 자료제출, 질문 검사 등을 받느라 업무나 주거, 재산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양한 행정조사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조사의 방법에 실태조사나 점검 등 유형을 추가하고, 조사대상자 의 조사 연기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규 정으로 수정하거나,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조사의 예외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통지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손 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복조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는 조사대상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우 므로, 행정기관 간 조사내용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행정기관 간 공동조사 요청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조사를 정비하도 록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행정조사 합리적 운용 및 실효성 학보 방안

행정조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종합 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조사기본법의 가이드라인이 개별 법령에 제

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체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행정기 관의 권한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정조사 제 도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행정조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조사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별 행정조사의 현 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 정조사기본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행정기관 별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각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내용 이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행정조사의 개념에 관해 서도 부처별 인식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담당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행정조사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에 대 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업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 제도의 문 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대상자인 기업 등 국민의 입장에서 현행 행정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조사 정비의 가이드라 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 법령의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 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 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기업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 기에서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규정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발굴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행정조사기본법 제 25 조에 규정된 자율신고제 도는 관 주도의 행정조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법령에 규정된 예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 성에 의문이 있다.

셋째, 행정조사 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 해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 제도가 제대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 29 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무 조정실의 담당 부서에서 매년 전 부처의 행정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까지 점검,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행정조 사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국무 조정실의 관리 담당자,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 조사대상자인 국민이 모두 참여하여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조사의 결과 등에 관해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수도 있으며, 조사대상자 인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마련될 것이므로 보 다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행정조사 정비방안의 추진절차


기업 등 국민에 대한 행정조사 관 련 애로사항 수렴


행정조사 관련 항목별 가이드라인 수립 -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개별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 정
비

제3단계
향정조사관리시스톔구축

## -

##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조사 등록 및 점검 활성화
-
국무조정실, 담당공무원, 국민이 함 께 소통하는 공간 조성

## 참 고 문 헌

## 1．국내 문헌

강현철•이세정，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 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0
국무조정실，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 2004 국무총리실，행정조사 정비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요령， 2009 국회법제실，법제이론과 법제실무，국회， 2016

국회 정무위원회，행정조사기본법 심사보고서， 2007
국무조정실， 2007 규제개혁백서， 2008
국무조정실， 2012 규제개혁백서， 2013
김계현•김한나，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고려법학 제65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김계현•김한나，의료기관현지조사의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의료정책 연구소， 2011.

김남철，행정법강론，박영사， 2014
김동희，행정법（I），박영사， 2011
김성수，일반행정법，홍문사， 2014
김성태，通信法上의 行政調查：독일 통신법（TKG）상 행정조사와의 비 교고찰，행정법연구 통권17호，한국행정법연구소， 2007

김신－최진식，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김영조，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토지공법연구 제21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김영조，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법학연구 제 8 권 제 3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김재광，행정조사기본법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법학논총 제 33 권 제 2 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김재광 외，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국무조정실 연구용역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5

박균성，행정법론（상），박영사， 2015
박정훈 외，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행정조사와 영장주의，법무부 연 구보고서， 2011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13
신상환，行政調査의 法理論과 法制小考，법제연구 제 13 호，한국법제연 구원， 1997

신종익•임상준，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규제개혁 차원의 접근 을 중심으로，한국경제연구원， 2004

오준근，＂행정조사＂의 공법이론적 재검토，공법연구 제31집 제3호，한 국공법학회， 2003

오준근，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 • 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 제45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유승희，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행사 범위와 그 한계 ：정보통신 망법 제55조 개정안을 중심으로，2006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 2006

이익현, 미국행정법의 기초개념(4)-행정정보의 수집과 공개(acquisi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법제(2010. 10), 법제처, 2010

장은혜,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국민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차 워크숍(2016. 6. 22) 자료집, 한국법 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정조사기본법(안) 검토 의견, 2006
정한중,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외법논집 제 38 권 제 2 호, 한 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조이현, 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7 최봉석, 행정법총론, 법령정보관리원, 2014

최승필, 세무조사에서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적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KERI Insight(13-07), 한국경제연구원, 201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5
Peter L. Strauss, 이익현 역, 미국행정법 개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 2. 외국 문헌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Policy, Report to Congres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ties by Executive Branch Agencies and Entities, available a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URLs＿Cited／OT2014／13－1175 ／13－1175．pdf（2016．10． 31 최종방문）

## 芝池義一，行政法総論講義〔第4叛〕，有斐閣（2001）

芝池義一，行政法総論講義，2006
藤原静雄，行政調査論の現状と課題一行政情報管理の視点をふまえて一，筑波ロー・ジャーナル5 号（2009 ：3）

深澤龍一郎，行政調査の分類と手続，ジュリスト増刊 行政法の争点，曽和俊文，行政調査手続の整備，ジュリストNo．1304，有斐閣（2006．1．1．－15）宇賀克也，行政手続法の解説〔改訂版〕，学陽書房（1995）

## 3．신문기사

＂기업 부담 늘리는 주범은 ‘행정조사•사회보험•법인세＂＂，헤럴드 경제 2015. 1．19．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9000352\＆md＝20150119110 118＿BL（2016．10． 31 최종방문）
＂의료계，복지부 현지조사 개선에＇회의적＇＂의학신문 2016．8．16．기사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pk＝607898）（2016． 10. 31 최종방문）
＂중기 3 곳 중 1 곳＂각종 신고로 행정부담 가중＂，이데일리 2015．12． 16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886406 $609599176 \& \mathrm{DCD}=\mathrm{A} 00306 \& \mathrm{OutLnkChk}=\mathrm{Y})(2016.10 .31$ 최종방문）
＂현지조사 거부한 한의원 1년 업무정지 정당＂，인터넷의협신문 2016．9． 23. 기사（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30） （2016．10． 31 최종방문）

## 4. 기 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6.8.4.] [법률 제13997호, 2016.2.3., 일부개정]) 일부 개정 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47\&1sId=\&efYd=20160804\&chr ClsCd=010202\&urlMode=1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 부 <br> 록

<부 록>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목록 ${ }^{182}$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 18 조제 1 항 | 개업노무사, 노무법인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질문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 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사업주,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제 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퇴직공제 적용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 | 고용노동부 | 고용보혐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4조 | 보고, 서류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조사의 목적 시 행령 위임 |
| 5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5조 | 사업장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출입 검사 | 현장조사 | * 조사의 목적 시 행령 위임 사전통지, 증표제 시, 결과통보 규정 |

[^33]|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 고, 자료제출, 출석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 요구 |  |
| 7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 108 조제 3 항 |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등 자격확인, 부정수급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출석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 요구 |  |
| 8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 109 조 |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조사 | 현장조사 |  |
| 9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조사 | 자료제출 의무 | 시행령에 근거 |
| 10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 조제 1 항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11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 지원센터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 보고 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 시, 결과통보 규정 |
| 12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기본법 제 38 조 |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 지원제도 위반 여부 보고 요구, 출입 검사 | 보고 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 시, 결과통보 규정 |
| 13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1항 |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 구, 장부, 서류 등 검사 및 질문 | 자료제출•보고요구 <br> 현장 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4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법 제 15 조의 3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용 및 알선자 조사(제1항) <br>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출(제2항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 시, 결과통보 규정 |
| 15 |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 |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한 보고, 자료제 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 시, 결과통보 규정 |
| 16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 조제6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취급 실적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17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 조제7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 또는 표준계 약서 보고 | 보고의무 |  |
| 18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0 조제1항 |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출석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요구 |  |
| 19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0 조제2항 | 퇴직연금제도 실시 사업장 및 퇴직연 금사업자에 대한 출입 검사 |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0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3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제1항),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제출(제2항) |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의무 |  |
| 21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4 제 1 항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2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3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실태조사 | 정기적 실시 |
| 23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제 1항 | 사업보고서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24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제 2항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25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 조 | 안전 - 보건진단결과의 보고 | 보고 의무 | 시행규칙에 근거 |
| 26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보고 요구 |  |
| 27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5 제1항 | 석면농도 자료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28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및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29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8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 자료제출 명령 |  |
| 30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 | 보고 의무 |  |
| 31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4항 | 건강진단결과 보고 | 보고 의무 |  |
| 32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제3항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3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34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 안전 - 보건개선계획서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5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6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7 조 | 산재 사업장 조사 | 현장조사 | 증표제시 규정 |
| 37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8 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 조사 | 현장조사 | 증표제시 규정 |
| 38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 1 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 계획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39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의6 제2항 | 진폐진단결과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40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관계인 에 대한 질문, 조사,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41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제26조 |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42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제29조제1항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자료제출 요구 |  |
| 43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제76조제1항 | 장애인 고용사업장 점검, 보고 | 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4 |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41조 | 근로자공급사업자 자료제출•보고 및 출입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br> 현장 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 시규정 |
| 45 |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41조 | 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자 등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 시규정 |
| 46 | 고용노동부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 정기•임시 이직자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47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청년고용현황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시행령에 근거 |
| 48 | 관세청 | 관세사법 제 22 조 <br>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1-1조 | 관세사회 정기 보고 | 보고의무 | 고시에 근거 |
| 49 | 관세청 | 관세법 제143조,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 역 등에 관한 고시 제 30 조 | 선(기)용품 재고조사 | 기 타 |  |
| 50 | 관세청 | 관세법 제164조 <br>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br> 관한 고시 제 10 조 | 자율관리보세구역 정기감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1 | 관세청 | 관세법 제 180 조제2항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 요구, 운영상황 검사 | 보고요구 |  |
| 52 | 관세청 | 관세법 제 203 조 | 종합보세구역 내 기록 검사 또는 조 사, 업무실적 등 보고 요구 | 현장조사 <br> 보고요구 |  |
| 53 | 관세청 | 관세법 제222조제3항 |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영업에 관한 보 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4 | 관세청 | 관세법 제222조제4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보고요구 | 보고요구 |  |
| 55 | 관세청 | 관세법 제 241 조, 제 263 조 |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 조사 | 현장조사 |  |
| 56 | 관세청 | 관세법 제 255 조의 2 , 제 263 조 | 종합인증우수업체 자체평가서 제출 및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7 | 관세청 | 관세법 제263조 |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 한 서류의 제출•보고 요구, 관계자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58 | 관세청 | 관세법 제 327 조의 2 제 7 항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도. 감독 | 보고요구 |  |
| 59 | 관세청 | 관세법 제 327 조의 3 제7항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사업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 | 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0 | 관세청 | 관세법 제89조 | 제조(술))공장 현장확인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1 | 관세청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 42 조 | 보세공장 특허변경사항 보고 | 보고요구 | 고시에 근거 |
| 62 | 관세청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 시 제5-1조 | 보세판매장 재고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 고시에 근거 |
| 63 | 관세청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 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 11조 |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분기별 운영현황 제출 | 자료제출 | 고시에 근거 |
| 64 | 관세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 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관 세법 제 222 조, 제 263 조 | 특송업체 정기점검 | 현장조사 |  |
| 65 | 교육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 13 조 | 특수교육 실태조사 | 실태조사 | 3 년마다 정기 실시 |
| 66 | 교육부 | 학교급식법 제 19 조제 1 항 |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 검사, 시 료채취 | 현장조사 시료채취 | 증표제시 |
| 67 | 교육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점검 및 점 검결과 보고 | 현장조사 <br> 보고요구 | 시행규칙에 근거 |
| 68 | 교육부 | 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 3 조제 2 항 |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 점검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9 | 교육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고외교 습에 관한 법률 제 16 조제 3 항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보고 요구, 출입 검사 | 보고요구 현장조사 |  |
| 70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3 항 |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수업료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요구 |  |
| 71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 33 조의 3 제2항 |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72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3 | 취업지원희망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질문 |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73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 | 제대군인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74 | 국민안전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소방특별조사 | 현장조사 | 제4조의2(소방특별 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br> 제4조의 3 (소방특별 조사의 방법•절차 <br> 등) <br> 제 4 조의 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75 | 국민안전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보고, 자 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질문(제1항) 소방관련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질문(제2항)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76 | 국민안전처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 21 조 | 승강기 제조, 수입, 관리, 검사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질문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77 |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2 조 |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조사 |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  |
| 78 | 국민안전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 2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79 | 국민안전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 1항 | 위험물시설에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 출, 보고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80 | 국민안전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 5항 | 탱크시험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 구, 출입검사 질문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시간제한, 비밀누 설금지 |
| 81 | 국민안전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또는 질문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82 | 국토교통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6조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br> 요, 출입검사 | 자료제출 $\cdot$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사전통지, <br> 증표제시 |
| 83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br>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 감정평가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84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br> 관한 법률 제47조 |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한 보고, <br>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 •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92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 87 조의 2 제5항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 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93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시행령에 근거 |
| 94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제 2항 |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시행령에 근거 |
| 95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 25 조제 4 항, 제6항 | 건축물의 공사감리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96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 87 조 |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 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 료제출, 보고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97 |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26 조 | 실무교육 결과보고 | 보고의무 |  |
| 98 |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제 19 조의 2 제 1 항 | 건축사 수행업무실적 제출 | 자료제출 |  |
| 99 |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제 30 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보고, 자료제 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100 |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제 38 조의 2 | 건축사협회의 업무보고 | 보고요구 |  |
| 101 | 국토교통부 | 경관법 제 18 조 |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102 | 국토교통부 | 경관법 제 25 조제 2 항 | 경관협정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자료제출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03 | 국토교통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 <br> 조제1항 | 골재채취 분기별 현황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시행규칙에 근거 |
| 104 | 국토교통부 | 골재채취법 제21조 |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자료제출 •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105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br> 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3항 |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 <br> 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106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 | 공공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 자료제출 요구 <br>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13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법 제21조제1항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114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법 제33조제4항 | 교통안전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br>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 $\cdot$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사전통지, <br> 증표제시 |
| 115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법 제34조제2항 | 교통안전진단보고서의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116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법 제36조제2항 | 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117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법 제37조제3항 | 권고 등의 이행실적 제출 요청 | 자료제출 요구 |  |
| 118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법 제45조제2항 |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를 위한 <br> 자료제출 |  | 사 |
| 119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법 제47조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 <br> 안전진단기관에게 보고, 자료제출 <br> 요 | 자료제출 •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23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8조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 리와 관련되는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124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
| 125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제 1 항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서 제출 | 자료제출 |  |
| 126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28 조 |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보 고 요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명령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127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 보고의무 |  |
| 128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 |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 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br> 증표제시 |
| 129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 20 조 | 도시 -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  |
| 130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 21 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 초조사 | 실태조사 |  |
| 131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제2항 | 토지거래허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 | 기 타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32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29 조 | 토지의 개발 - 이용 등의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133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 125 조 | 전국 지가변동률 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
| 134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 137 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135 |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 13 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  |
| 136 | 국토교통부 | 궤도운송법 제 16 조제 2 항 | 건설•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 정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137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 조정 또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138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 16 조 | 대중교통현황조사 | 실태조사 |  |
| 139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 18 조제 4 항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 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40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 22 조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 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서류, 물건 검사 또는 관계인 질문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141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142 | 국토교통부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 자료제출의무 | 시행령에 근거 |
| 143 | 국토교통부 | 도로법 제77조제4항 | 제한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144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조제3항 |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 | 현장조사 |  |
| 145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조제 4 항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자료제출의무 |  |
| 146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 조의 2 제 2 항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 | 기 타 |  |
| 147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48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 조의 5 제 2 항 | 협회업무 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149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5조 | 도시정비사업 실적 보고의무 <br>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제출, 보고요 <br> 구, 출입검사 등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
| 150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제3항 | 도시정비사업 현장조사 | 현장조사 |  |
| 151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6조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기 초조사, 자료제출 |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  |
| 152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 74 조 |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자료제 출,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중표제시 |
| 153 |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 조제 5 항 | 특정원인 녹지설치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시행령에 근거 |
| 154 |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 조제 2 항 | 특정원인 녹지설치자에게 재정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시행령에 근거 |
| 155 | 국토교통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156 | 국토교통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제 30 조제 2 항 및 제 3 항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 실 태조사 | 실태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57 | 국토교통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br> 별법 제36조 |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br> 자료 형 필요왕 항료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158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br>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br> 조사 | 기 타 |  |
| 159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br> 관한 법률 제61조 | 복합물류터미널 건설, 물류단지 개발 <br> 엔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출빕 <br> 검사 등 | 자료제출 •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68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행위 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결과통지 |
| 169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 30 조제 2 항 | 부동산개발업협회 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170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39 조의 2 |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보고 요구, 업무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171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 1항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보고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172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9 조의 14 |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 업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173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 |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174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
| 175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관리대장 등 제출의무, 서류 열람 | 자료제출 현장조사 |  |
| 176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의 실적 등 제출 | 자료제출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77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 조의 3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 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178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등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179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
| 180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보 고, 자료제출 |  |  |
| 181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현황 제출, 서류 조사 등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br> 증표제시 |
| 182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2조 |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보고 | 보고의무 |  |
| 183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79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또 는 자동차 소유 또는 사용 사항 보고, 서류제출,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184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 30 조의 3 제 2 항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중지를 위한 조사 | 기 타 |  |
| 185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 32 조제 4 항 | 성능시험평가서 제출 | 자료제출 |  |
| 186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 33 조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 자료제출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87 |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3 조의 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 자료제출 |  |
| 188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 제출 요청 | 자료제출 요구 | 지침에 근거 |
| 189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지침에 근거 |
| 190 | 국토교통부 | 주거기본법 제 20 조 | 주거실태조사(정기, 수시) | 실태조사 | 증표제시 |
| 191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 19 조의 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192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등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193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 25 조 | 노외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보고, 자 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194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 14 조제 1 항 |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의 확인 | 기 타 |  |
| 195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1조제6항 |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196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4조제2항 | 감리자의 업무수행상황 등 보고 | 보고의무 |  |
| 197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 48 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 현장조사 |  |
| 198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199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93조 | 주택법에 따른 인가승인, 등록한 자에 게 보고 요구, 출입검사 | 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00 | 국토교통부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10 조 | 지하수 관련 시정 조치 확인 조사 | 현장조사 | 시행규칙에 근거 |
| 201 | 국토교통부 | 지하수법 제17조제1항 |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 기 타 |  |
| 202 | 국토교통부 | 지하수법 제 21 조 | 수질검사 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 - 이용상황 또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보고,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03 | 국토교통부 | 지하수법 제 34 조 |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필 요한 사항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04 | 국토교통부 | 지하수법 제5조 |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 | 기 타 |  |
| 205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제31조 | 형식승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자 료제출,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06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제61조 | 철도사고등 보고, 사고내용 조사 | 보고의무 현장조사 |  |
| 207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제71조제2항 |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 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08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제73조 |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자 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09 | 국토교통부 | 택지개발촉진법 제 24 조 |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10 | 국토교통부 | 항공법 제153조 | 항공안전을 위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질문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11 | 국토교통부 | 항공법 제95조제6항 | 공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지형 도면 제출 | 자료제출 |  |
| 212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0 조의 2 제 4 항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 록•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 자료제출 요구 |  |
| 213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 조의5 | 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214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경영 지도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215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4 조의 2 제 3 항 내지 제 5 항 | 재정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16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 조의6제 5 항 | 화물운송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제 출 요구, 실지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217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 조의7 | 공제조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구, 조사 검사 |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18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 | 협회 및 연합회 감독을 위한 보고서 제출, 출입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19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 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20 | 기상청 | 기상산업진흥법 제 12 조 | 기상산업 실태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221 | 기상청 | 기상산업진흥법 제 22 조 |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 대상 자료제출, 출입검사 등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22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 귀속재산 관리조사 | 현장조사 | 시행령에 근거 증표휴대 |
| 223 | 기획재정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16 조 |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 사 등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24 | 기획재정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보조금 집행 적정성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25 | 기획재정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 41 조의 9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226 | 기획재정부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7조 | 수입인지 관리 실태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27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11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 정 등에 필요한 자료 확인 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228 | 농림축산 식품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가축 소유자,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보고, 출입검사, 시료 수거 | 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29 | 농림축산 <br> 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2 조 | 가축병성감정 실적 보고 등 | 보고의무 |  |
| 230 | 농림축산 <br> 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 조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 현장조사 |  |
| 231 | 농림축산 <br> 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 조의 5 |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32 | 농림축산 <br> 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3조, 제44조, 제52조제2항 |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 검토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233 | 농림축산 <br> 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 | 가축전염성질병 예방을 위한 보고 명령 | 보고요구 |  |
| 234 | 농림축산 <br> 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 | 가축전염성질병 예방을 위한 보고 요구 | 보고 요구 |  |
| 235 | 농림축산 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 조제 5 항 | 가축소유자 등의 검역을 위한 자료제 출, 검사 등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36 | 농림축산 식품부 |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성능 심사요령 |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신청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예규에 근거 |
| 237 | 농림축산 식품부 | 낙농진흥법 제17조 | 보고 요구, 출입검사 등 | 자료제출•보고요구 | *보고사항을 불명확하게 규정 증표제시 |
| 238 | 농림축산 <br> 식품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76조 | 도매시장 실태 조사 | 실태조사 |  |
| 239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79조 | 도매시장 등에 대한 재산, 업무집행상 황 등 보고 요구 | 보고 요구 |  |
| 240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 80 조 | 도매시장 운영 등에 대한 검사 |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41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42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3 조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우수관리시 설 등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 사 등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43 | 농림축산 <br> 식품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0 조 | 농산물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 한 조사 등 |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44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9조 제1항 |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 | 현장조사 |  |
| 245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 농산물 안전성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246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약관리법 제 25 조 | 농약 등 또는 원제 관리 상황 보고 | 보고의무 |  |
| 247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48 | 농림축산 식품부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 리 규정 제 13 조 | 검사기관의 검사 실적 제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고시에 근거 |
| 249 | 농림축산 식품부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 리 규정 제24조제2항 |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 육 계획 및 결과 보고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고시에 근거 |
| 250 | 농림축산 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 39 조 |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자 료제출•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
| 251 | 농림축산 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45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 험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동물의 등록 자료 제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과 운 영실태 자료 제출 등 | 자료제출 요구 <br> 실태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  |  |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자 료 제출 |  |  |
| 252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밭농업직불제이행점검조사 조건불리직불제 이행점검조사 | 현장조사 | * 조사의 직접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음 |
| 253 | 농림축산 식품부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 역요령 제 11 조 |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실적 보 고 및 자료제출 | 자료제출•보고 | 고시에 근거 |
| 254 | 농림축산 식품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1 개월 이상 미검역 상태로 장치한 물품 목록 자료 제출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시행규칙에 근거 |
| 255 | 농림축산 식품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체 점검 | 현장조사 |  |
| 256 | 농림축산 식품부 | 식물방역법 제 18 조, 제 19 조 제1항 <br>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 조제6항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257 | 농림축산 식품부 | 식물방역법 제 23 조 | 경유물품의 안전사고에 대한조사 | 현장조사 |  |
| 258 | 농림축산 식품부 | 식물방역법 제31조의5 | 분포조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59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식물방역법 제 31 조의 6 | 역학조사 | 현장조사 |  |
| 260 | 농림축산 식품부 | 식물방역법 제33조 |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 현장조사 |  |
| 261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식물방역법 제34조 | 방제 필요 사실 보고의무 | 보고의무 |  |
| 262 | 농림축산 식품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 위한 자료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263 | 농림축산 식품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 | 보호품종의 실시여부 등에 관한 보고 요구 | 보고 요구 |  |
| 264 | 농림축산 식품부 | 식품산업진흥법 제 26 조 |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3일전), 증표제시 |
| 265 | 농림축산 식품부 | 약사법 제 38 조제 2 항, 제 42 조 제4항 | 동물용의약품등 생산,수출입 및 판매 실적 보고자료 제출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266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양곡관리법 제 27 조 | 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 $\begin{gathered} \text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text { 현장조사 } \end{gathered}$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67 | 농림축산 식품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사료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표 시사항 조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68 | 농림축산 식품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26 조의 2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 현장조사 |  |
| 269 | 농림축산 식품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출입 검사, 보고,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70 | 농림축산 식품부 | 인삼산업법 제 15 조제 3 항 |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 보고,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71 | 농림축산 식품부 | 인삼산업법 제17조제5항 | 인삼류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제 출의무 | 자료제출 |  |
| 272 | 농림축산 식품부 | 인삼산업법 제 20 조의 3 | 인삼산업 통계조사 | 실태조사 |  |
| 273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인삼산업법 제 29 조 | 출입검사, 시료수거 등 | 현장조사, 시료채취 | 증표제시 |
| 274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률 제 21 조 | 소싸움경기시행자 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 | 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75 | $\begin{aligned} & \text { 농림축산 } \\ & \text { 식품부 } \end{aligned}$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의 2 |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조사 | 현장조사 |  |
| 276 | 농림축산 식품부 | 종자산업법 제23조제2항 | 종자결함으로인한 피해 현황 조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77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종자산업법 제 45 조 | 종자 유통조사 | 현장조사, 시료채취 | 증표제시 |
| 278 | 농림축산 식품부 | 종자산업법 제4조 | 종자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
| 279 | 농림축산 식품부 | 초지법 제 24 조제 1 항 | 초지관리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280 | 농림축산 식품부 | 초지법 제 5 조의 2 |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281 | 농림축산 식품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9 조 |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보고, 출입검사, 수거 |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시료채취 | 증표제시 |
| 282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4 조 |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 는 포장육의 생산실적 보고 | 보고의무 |  |
| 283 | 농림축산 식품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11조 |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 사 및 평가 | 실태조사 |  |
| 284 | 농림축산 식품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 12 조 |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 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조사, 시료채취 | 현장조사, 시료채취 |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85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31조제1항 | 친환경인증농산물 시판품 조사, 인증 품 생산 과정 조사 등 | 현장조사 | 사전통지 |
| 286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 32 조제 1 항 |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287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 49 조제 1 항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 품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288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 50 조제 1 항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사후관리 조사 | 현장조사 |  |
| 289 | 농림축산 식품부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 12조 | 반출 - 반입 검사 | 현장조사 |  |
| 290 | 농림축산 식품부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 6조 | 진도개 사육 실태 조사(정기) | 실태조사 | 증표제시 |
| 291 | 문화체육 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1 항 | 게임산업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 실태조사 |  |
| 292 | 문화체육 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제 4 항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예방조치 자료제출 및 보고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293 | 문화체육 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제 6 항 |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 보고의무 |  |
| 294 | 문화체육 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법령 준수사항 주기적 조사 관리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 검사 <br> 게임물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295 | 문화체육 관광부 | 공연법 제 12 조의 4 | 안전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현장확인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296 | 문화체육 관광부 | 공연법 제 12 조제 5 항 | 공연장 안전검사 결과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
| 297 | 문화체육 관광부 | 공연법 제31조 | 공연자 또는 공연장 등에 대한 감독 | 현장조사 |  |
| 298 | 문화체육 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 33 조의 2 | 유원시설에서의 중대사고 발생시 보 고의무 및 사고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299 | 문화체육 <br> 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78조 | 관광 사업 보고•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300 | 문화체육 <br> 관광부 | 국어기본법 제 12 조제 1 항 | 한글맞춤법 영향 평가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01 | 문화체육 <br> 관광부 | 국어기본법 제9조 <br>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 1항 |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302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 | 콘텐츠산업통계 실태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03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30 조의3 | 문화산업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 조사 | 실태조사 |  |
| 304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5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감독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305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제4항 | 기부금품 가액 및 품명 보고 | 보고의무 |  |
| 306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 3 조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07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 40 조 | 감독에 필요한 사항 보고, 출입검사 | 보고 요구 현장조사 |  |
| 308 | 문화체육 관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16 조제 3 항 | 사행산업 관련 통계 조사 | 실태조사 |  |
| 309 | 문화체육 관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18 조 |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10 | 문화체육 관광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9조 | 사행산업 부작용 예방과 치유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311 | 문화체육 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여론집중도조사 | 현장조사 |  |
| 312 | 문화체육 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 3 항 | 신문사업자의 소유제한 위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313 | 문화체육 <br> 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14 | 문화체육 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 | 음악산업 관련 자료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15 | 문화체육 관광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전통사찰 지정관련 현지조사 | 현장조사 | *조사의 직접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316 | 미래창조 과학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48 조 | 정보화선도사업 추진실태 등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317 | 미래창조 과학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9조 | 정보화 지표조사 | 기 타 |  |
| 318 | 미래창조 과학부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50 조 |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자료제출 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19 | 미래창조 과학부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 13 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
| 320 | 미래창조 과학부 | 방송법 제79조 | 유선방송국 설비검사 | 현장조사 |  |
| 321 | 미래창조 과학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 조제 5 항 | 기술기준 적합 설치 - 운영 여부 조사 | 현장조사 |  |
| 322 | 미래창조 과학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2조 |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 료 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323 | 미래창조 <br> 과학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3조 | 방송통신설비 보고 및 출입 검사 |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324 | 미래창조 과학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 한 법률 제 10 조의 2 제 7 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에 대한 자료제출, 현장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325 | 미래창조 과학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 한 법률 제 11 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검사 | 현장조사 |  |
| 326 | 미래창조 과학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 한 법률 제 16 조 | 연구실 사고 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327 | 미래창조 과학부 |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 | 우주산업실태 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28 | 미래창조 과학부 | 원자력 진흥법 제 16 조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
| 329 | 미래창조 과학부 | 인터넷 멸티미디어 방송사 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 터 제4항 | 영업보고서 제출 및 검증을 위한 자 료제출 요구, 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330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 11 조제 3 항 |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공익성심사를 위 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331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 5 항 |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332 | 미래창조 <br>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 영업보고서 제출, 내용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333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334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 | 전기통신역무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35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관련 자료 조사 | 현장조사 |  |
| 336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 82 조 | 전기통신설비상황 등 검사, 보고요구 | 보고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37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6항 | 통신자료제공현황 연2회 보고의무 | 보고의무 |  |
| 338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4항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 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339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 88 조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통계 보고 | 보고의무 |  |
| 340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br> 제88조제2 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및 행정기관에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  |
| 341 | 미래창조 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 88 조제 4 항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현황 등의 보고 | 보고의무 |  |
| 342 | 미래창조 과학부 | 전자서명법 제19조제2항 | 공인인증기관 정기 점검 | 현장조사 |  |
| 343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제 24 조 | 무선국 검사 | 현장조사 |  |
| 344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제 30 조 | 무선국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 도점검 | 현장조사 | * 조사의 근거가 <br> 명확하게 <br> 규정되지 않음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45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제 44 조의 4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기 타 |  |
| 346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제47조의 2 제 5 항 |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 | 기 타 |  |
| 347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제47조의 3 제 3 항 | 전자퐈 적합성 여부 측정 또는 조사 | 기 타 |  |
| 348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제58조의6 | 지정시험기관 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349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제6조제2항 |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 기 타 |  |
| 350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제 71 조의 2 | 전파법 위반 관련 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351 |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과징금부과를 위한 금지행위 위반여 부 조사 | 현장조사 |  |
| 352 |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 한 법률 제 17 조 | 영업보고서 제출, 검증을 위한 자료제 출 요구, 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353 |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 한 법률 제 36 조 |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 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54 |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법 제 35 조의 5 제 3 항 |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 자료제출 요구 |  |
| 355 |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법 제 58 조제 2 항 | 당해연도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56 | 방송통신 <br> 위원회 | 방송법 제 76 조의 3 제 3 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5 |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출입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357 | 방송통신 <br> 위원회 | 방송법 제 85 조의 2 제 4 항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를 위 한 자료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58 | 방송통신 <br> 위원회 | 방송법 제 8 조제 4 항 <br>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등의 자료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59 |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법 제98조 | 방송사업자 관련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60 |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5항 | 방송통신설비 조사 |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361 | 방송통신 <br> 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제2항 <br>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 본계획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62 | 방송통신 <br> 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2조 | 방송통신 관련 통계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63 | 방송통신 <br> 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3조 | 방송통신 설비에 관한 보고, 출입검사 |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364 | 방송통신 <br> 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 료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65 | 방송통신 <br> 위원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 제17조 <br>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여부 조사 | 현장조사 |  |
| 366 | 방송통신 <br>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 재정사건 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영 치, 출석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요구 |  |
| 367 | 방송통신 <br>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 조의4제4항 | 침해사고 원인 조사 | 현장조사 |  |
| 368 |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제1항 |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8조 |  |  |  |
| 369 | 방송통신 <br>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제2항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관련 자료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70 | 방송통신 위원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3조 제1항 | 한국교육방송공사 전년도 결산서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71 | 방송통신 <br> 위원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0조 |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 편성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72 | 방송통신 <br> 위원회 | 방송법 제83조 | 방송실시 결과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73 | 방송통신 <br> 위원회 | 방송법 제 59 조제 1 항 | 전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74 |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법 제90조 <br>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 시청자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375 |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제 3 항 |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현장검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76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 조 | 감염병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377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 | 감염병 역학조사 | 현장조사 |  |
| 378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의 4 |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379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 조 | 예방접종에 관한 조사 및 역학조사 | 현장조사 |  |
| 380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 조 |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 록 제출 요청 | 자료제출요구 |  |
| 381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제 3 항 |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 응에 관한 조사, 역학조사 | 현장조사 |  |
| 382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 조 |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 |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383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 제출 요구, 검사 또는 질문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384 | 보건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 조의 2 |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출입검사 질문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85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도 점검 | 현장조사 |  |
| 386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387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 요양기관 현지조사 | 현장조사 |  |
| 388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제 14 조, 제 122 조 | 국민연금 사업장 및 가입자 적정 관 리실태 확인 | 현장조사 |  |
| 389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제 5 조제 1 항 | 노인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390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 현장조사 |  |
| 391 | 보건복지부 | 농어촌등보건 의료를 위한특 별조치법시행규칙 제 28 조 | 보건진료소 운영실적 보고 | 보고요구 | 시행규칙에 근거 |
| 392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 2 항 |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현장점검 | 현장조사 |  |
| 393 |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관계장소 출 입.조사 | 현장조사 |  |
| 394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13조제3항 | 아동복지시설 조사 | 현장조사 |  |
| 395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제42조 | 어린이집 지도점검 | 현장조사 |  |
| 396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397 | 보건복지부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1조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 현장조사 |  |
| 398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 31 조 | 장애인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399 | 보건복지부 | 정신보건법 제 39 조 | 정신보건시설 운영상황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400 | 보건복지부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부적격 혈액 처리현황 조사 | 자료제출의무 | 시행규칙에 근거 |
| 401 | 보건복지부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02 | 보건복지부 | 혈액관리법 제 10 조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원인의 파악 등 을 위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403 | 보건복지부 | 혈액관리법 제 13 조제 1 항 | 혈액관리업무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404 | 보건복지부 | 혈액관리법 제 13 조제 3 항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405 | 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 조 | 목재제품 규격•품질 및 품질인증 조사 |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06 | 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2 항 | 목재유통현황 등의 보고, 출입 검사 | 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407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 조 | 산림자원의 조사 | 현장조사 | 사전통지(3일전) |
| 408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종묘생산업자 등에 대한 업무 보고, 관련 자료제출, 출입검사 양묘사업실 태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409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13 조 |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410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1 조의 2 | 재선충병 역학조사 | 현장조사 <br> 시료채취 |  |
| 411 | 산림청 | 통계법 제 18 조 | 임산물생산조사 | 현장조사 |  |
| 412 | 산업통상 자원부 |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 부품소재산업 동향조사 | 실태조사 |  |
| 413 | 산업통상 <br> 자원부 |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의 2 | 공모소재 • 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14 |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415 |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10 조의 2 |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 실태조사 |  |
| 416 |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8 조제 3 항 |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실태 조사 | 실태조사 |  |
| 417 | 산업통상 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 조의 9 제 3 항 |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고, 자 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18 | 산업통상 <br> 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3 조의 5 제 3 항 | 혼합의무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 고,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19 | 산업통상 <br> 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5조 |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통 계자료 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
| 420 | 산업통상 <br> 자원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8 조 |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21 | 산업통상 자원부 | 에너지법 제 19 조제 5 항 | 에너지총조사 | 실태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22 | 산업통상 자원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후관리 | 현장조사 |  |
| 423 | 산업통상 자원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 제2항 | 공단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보고, 검사 |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
| 424 | 산업통상 자원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 효율관리기자재 - 대기전력저감대상제 품 •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 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출입검사 | 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425 | 산업통상 자원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점검을 위한 실태 조사 | 실태조사 |  |
| 426 | 산업통상 자원부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제 27 조 |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427 | 산업통상 자원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25 조 |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에 대한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28 | 산업통상 <br> 자원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조제2항 |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
| 429 | 산업통상 자원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제 32 조 | 공산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430 | 산업통상 자원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제33조 |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431 | 산업통상 자원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 조의 2 | 산업환경통계조사 | 실태조사 |  |
| 432 | 식품의약품 안전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 제58조 | GMO 표시대상 농산물의 표시 실태 조사 | 현장조사 |  |
| 433 | 식품의약품 안전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7조 | 의료용 마약류 수거검사 및 표시기재 점검 | 현장조사 |  |
| 434 | 식품의약품 안전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 원료물질취급자 지도 점검 | 현장조사 |  |
| 435 | 식품의약품 안전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 마약류 취급자 지도 점검 | 현장조사 |  |
| 436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 | 시험검사기관 검사실적 보고 | 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37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22조 |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물품수거 |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438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33조제2항제1호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439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46조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 보고요구 |  |
| 440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86조 | 식중독 발생에 관한 조사, 보고 | 보고요구 현장조사 |  |
| 441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 22 조 | 시험검사 교육기관 교육결과 보고 | 보고요구 |  |
| 442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16조 |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 감독(정기) | 현장조사 |  |
| 443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약사법 제 38 조 | 의약품 등의 생산, 수입실적 보고 | 보고요구 |  |
| 444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약사법 제 39 조 | 의약품 등의 회수계획 보고 | 보고요구 |  |
| 445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약사법 제 47 조의 2 제 4 항 | 의약품 유통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 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46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약사법 제69조 |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검 사, 물품 수거 <br>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생동성시험 실태조사 생물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지도 점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지도 점검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지도 점검 임상시험 실태조사 <br> 한약(생약)제조, 수입업체 출입검사 한약재 판매업소 출입검사 등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447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약사법 제 86 조의 6 |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  |
| 448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제 13 조제 2 항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실적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49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제 30 조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관리 점검 | 현장조사 |  |
| 450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제 31 조제 1 항 | 부작용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51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제 34 조 | 회수, 폐기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52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 | HACCP 운용의 적정성 검증 | 현장조사 |  |
| 453 | 식품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법 제 18 조 |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보 고, 출입검사, 물품수거 |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454 | 식품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법 제 5 조제 3 항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55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34 조 |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56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약사법 제68조의8 | 의약품 등 부작용 보고 | 보고요구 |  |
| 457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시험•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 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요구, 출입 검사 질문 <br>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점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도 점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정기 지도 점검 | 보고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58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제 32 조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출입•검사 | 현장조사, 시료채취 | 증표제시 |
| 459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생산실적 보고 | 보고요구 |  |
| 460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 보고요구 |  |
| 461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약사법 제34조 <br>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 |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 성시험 계획서 변경사항 보고 | 보고요구 |  |
| 462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 한법률 제 23 조 | 인체조직은행 지도, 점검 | 현장조사 |  |
| 463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64 |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 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465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66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2 조제 1 항 | 국제결혼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67 |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조제1항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68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69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 다문화수용성 조사 | 현장조사 |  |
| 470 | 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br> 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r> 조 <br> 송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br>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매매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71 | 여성가족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br>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 실태조사 |  |  |
| 472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 양성평등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73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 여성정책수요조사 | 현장조사 |  |
| 474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 성희롱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현장조사 |  |  |  |  |  |
| 475 | 여성가족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 <br> 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br>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br> 일제하 잉본군위안부 피해 <br> 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br> 기념사업 등에 봔반 법균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 <br> 제10조 | 현장조사 |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76 | 여성가족부 |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 | 기 타 |  |
| 477 | 여성가족부 |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78 | 여성가족부 |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2항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 구사업의 지원 등 |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79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제3항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80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81 | 원자력안전 위원회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3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82 | 원자력안전 위원회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38 조 | 방사능방재 정기검사 | 현장조사 |  |
| 483 | 원자력안전 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84 | 원자력안전 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제 16 조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85 | 원자력안전 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제 22 조,제 37 조 |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검사 | 현장조사 |  |
| 486 | 중소기업청 |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 항실태조사 |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87 | 중소기업청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 1-2항 <br>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 제1항 | 수탁 - 위탁거래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88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6 조 |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89 | 중소기업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10 조 |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90 | 중소기업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10 조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91 | 중소기업청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성기업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92 | 중소기업청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 조제 1 항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493 | 중소기업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494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 21 조 | 중소기업실태조사 | 실태조사 |  |
| 495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 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실태조사 |  |
| 496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 조의 4 | 소모성자재납품업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497 | 통계청 |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 17 조 | 농어업법인조사 | 현장조사 |  |
| 498 | 통계청 |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17조 | 사교육비조사 | 현장조사 |  |
| 499 | 통계청 |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 17 조 | 농작물생산조사 | 현장조사 |  |
| 500 | 통계청 |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 17 조 | 사회조사 | 현장조사 |  |
| 501 | 통계청 | 통계법 시행령 제 22 조 통계법 제 17 조, 제 25 조, 제 32조 | 가축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02 | 통계청 | 통계법 제17~18조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03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 가계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04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조사 | 현장조사 |  |
| 505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 어업생산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06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 현장조사 |  |
| 507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 22 조 | 전국사업체조사 | 현장조사 |  |
| 508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 농가경제조사 | 현장조사 |  |
| 509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 22 조 | 가계금융 - 복지조사 | 현장조사 |  |
| 510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 외국인고용조사 | 현장조사 |  |
| 511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 운수업조사 | 현장조사 |  |
| 512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 소비자물가조사 | 현장조사 |  |
| 513 | 통계청 | 통계법 제 17 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 광업 - 제조업조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14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 22 조 | 기업활동조사 | 현장조사 |  |
| 515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 서비스업조사 | 현장조사 |  |
| 516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 건설업조사 | 현장조사 |  |
| 517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현장조사 |  |
| 518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 농업면적조사 | 현장조사 |  |
| 519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 농림어업조사 | 현장조사 |  |
| 520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제 18 조 | 도소매업조사 | 현장조사 |  |
| 521 | 통계청 | 통계법 제 17 조,제 18 조 | 기계수주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22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제 18 조 | 건설경기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23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제18조 | 서비스업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24 | 통계청 | 통계법 제 17 조,제 18 조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25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제1항 | 인구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26 | 통계청 | 통계법 제 17 조제 1 항 | 어가경제조사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27 | 통계청 | 통계법 제 17 조제 1 항 | 지역별고용조사 | 현장조사 |  |
| 528 | 통계청 | 통계법 제 17 조제 1 항 | 경제총조사 | 현장조사 |  |
| 529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제1항 | 경제활동인구조사 | 현장조사 |  |
| 530 | 통계청 | 통계법 제 18 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4조 | 산지쌀값조사 | 현장조사 |  |
| 531 | 통계청 | 통계법 제 18 조 | 어류양식동향조사 | 현장조사 |  |
| 532 | 통계청 | 통계법 제 18 조 <br> 통계법 시행령 제24조 | 양곡소비량조사 | 현장조사 |  |
| 533 | 특허청 | 발명진흥법 제 10 조 | 무상실시권 실적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34 | 특허청 | 발명진흥법 제 20 조의6조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535 | 특허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 료체취 | 현장조사 |  |
| 536 | 특허청 | 특허법 제 125 조 | 특허실시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37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55 조제1항 | 공유수면 관리 실태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538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공유수면 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39 | 해양수산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40 |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수산물원산지표시등의 조사 | 현장조사 |  |
| 541 |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 수산물품질인증 사후관리 점검 | 현장조사 |  |
| 542 |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 수산물안전성 조사 | 현장조사 |  |
| 543 |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6조 농수산물품질관리 법시행령 제 25 조 | 수출용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조사 | 현장조사 |  |
| 544 | 해양수산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5 항 | 무인도서 이의신청 현장조사 | 현장조사 |  |
| 545 | 해양수산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무인도서 점검 | 현장조사 |  |
| 546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69조제2항,제 69조제 3 항 | 국적선 특별점검 | 현장조사 |  |
| 547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5조 |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48 | 해양수산부 | 선박투자회사법 |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에 대 한 감독, 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49 | 해양수산부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 리법 제33조제1항 | 선박평형수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50 |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126조 | 선원근로 감독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출석요구 |  |
| 551 | 해양수산부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4조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552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 제 35 조 | 수입염 입고확인서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53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 제 35 조 | 부산물염 판매계획서 자료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54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 제 35 조 | 국내염 생산 및 재고량 확인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55 |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의2제3항 | 양식제한조치 명령 이행여부 점검 결 과와 방역교육 실시결과 보고 | 보고요구 |  |
| 556 |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 10 조제2항 | 수산생물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 보고요구 |  |
| 557 |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1조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 현장조사 |  |
| 558 |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4조 | 수산생물양식자와 수산생물집합시설 의 관리자 등에게 보고 요구 | 보고요구 |  |
| 559 | 해양수산부 | 수산업법 제96조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60 | 해양수산부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 55 조제 1 항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강제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561 | 해양수산부 | 종자산업법 제 26 조,제 138 조, 제147조 | 제출된 종자의 처리 관련 자료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62 | 해양수산부 | 종자산업법 제 38 조,제 46 조 | 종자 시료 제출 | 시료채취 |  |
| 563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법 제 20 조 |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564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법 제32조제4항 |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 인 자료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565 |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 28 조제5항 | 항만시설장비 검사 대행기관 확인 점검 | 현장조사 |  |
| 566 |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41조제4항 |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567 |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 73 조제 1 항 | 항만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 점검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568 |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91조제5항 | 항만협회에 대한 감독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569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법 제48조제6항 | 인증심사업무의 대행실적 보고 | 보고요구 |  |
| 570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법 제 58 조 |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 현장조사 |  |
| 571 | 해양수산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제 48 조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관련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72 | 행정자치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br> 률 제43조 | 국가기록물의 지정 | 현장조사 |  |
| 573 | 행정자치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br> 률 제46조 |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74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br> 제4조, 제8조 |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 현장조사 |  |
| 575 |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br> 관한 법률 제9조 |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의 위 <br> 법ㅇ 검사 | 현장조사 |  |
| 576 | 행정자치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 <br> 조제7항 | 옥외광고업자 영업실태 조사 | 현장조사 |  |
| 577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 25 조 | 온천 허위 과장광고 등 관리실태 점검 | 현장조사 | 현장조사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81 | 환경부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 조제5항 | 사업장별 할당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 - 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582 | 환경부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5항 | 특정수질유해물질 취급량과 배출량 조사 |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583 | 환경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 조의 2 제 1 항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자료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584 |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관리 법 제 13 조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585 |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관리법 제 13 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 과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586 |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관리법 제 13 조 |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587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 43 조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 현장조사 |  |
| 588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 50조 |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 과 절차 등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589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5항 | 평균배출량(FAS) 관련 자동차 판매현 황자료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590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 82 조 |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 출 요구, 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출 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591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제 5 조 |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 설정변경 보고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592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제 22 조 |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 등 측정결과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593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제42조 |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지도점검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594 | 환경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관리감독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출석요구 |  |
| 595 | 환경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 조제1항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수입반입허가 실적 보고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596 | 환경부 | 석면안전관리법 제40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필요사항 조사 및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597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 | 진료에 관한 보고, 진료기록 자료 보고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598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법 제 43 조제 1 항 | 석면질병 조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599 | 환경부 |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검 사보고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00 | 환경부 | 소음 - 진동관리법 제52조 | 소음진동관리 시책의 추진상황 연차 보고서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01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 23 조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및 보급실 적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602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 23 조 |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및 계획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03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36조 |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자 |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604 | 환경ㅂ | 수도법 제27조 | 수질기준초과 내역 공지 및 결과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05 | 환경부 | 수도법 제29조 | 수질검사 결과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06 |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이행사 항 평가보고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07 |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08 |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신고사업 장 지도 점검 | 현장조사 |  |
| 609 |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 |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10 |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 현장조사 |  |
| 611 | 환경부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 조제1항 <br> 습지보전법 제22조제1항 | 습지보호지역의 출입제한, 훼손시 존 치, 사업 시행자의 보고의무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12 | 환경부 | 습지보전법 제 22 조 | 습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조사 또는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13 |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 17 조 | 악취배출시설 지도 점검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614 |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4조 | 악취실태조사 |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615 | 환경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수렵장운영실적보고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616 | 환경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6 조제 1 항 |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운영관리, 멸종 위기 야생생물 포획,허가,신고 등의 관리 | 자료제출 - 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17 | 환경부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 15 조제 2 항 | 특정유해물질 배출량 등 줄이기 계획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18 | 환경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지법 제 17 조, 제 12 조 | 조명기구 관리 | 현장조사 |  |
| 619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 24 조 | 행위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 시설 관리허가 |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620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 24 조제 3 항 |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 시설관리허가(사후관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21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 24 조제 3 항 | 불법단속, 행정대집행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22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2조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 실 적서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23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8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24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재활용계획 수립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625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6조 |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626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6조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사항 점검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27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9조 |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 수여부 확인 자료제출 및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28 | 환경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 역 영향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시료채취 |  |
| 629 | 환경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시설 관리 감독 | 현장조사 |  |
| 630 |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 이행여부 등 보고 | 보고요구 |  |
| 631 |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37 조 | 재활용회수실적 조사 및 재활용관련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br> 증표제시 |
| 632 |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37 조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폐차 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br> 증표제시 |
| 633 |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37 조 | 재활용관련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634 |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37 조 | 폐자동차 재활용 관리감독(결과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635 |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37 조 | 폐자동차 재활용관리감독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사전통지, 증표제시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36 |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39 조 | 인수인계 자료 제출 | 자료제출 요구 |  |
| 637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제 15 조의 3 제3항 |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제출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638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639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제2 항제2항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640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제2 항제 3 항 | 토양오염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 요 구, 출입검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641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 39 조 |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 현장조사 |  |
| 642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58조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자료제출 - 보고요구 |  |
| 643 | 환경부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2 조 | 수입 및 수출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 현장조사 |  |
| 644 | 환경부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2 조 | 폐기물 수출입 실적 등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45 | 환경부 | 하수도법 제 19 의 3 조, 제 19 조 의 4 , 제 19 조의 5 조, 제 20 조의 3 , 제 20 조의 4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46 | 환경부 | 하수도법 제 20 조, 제 20 조의 <br> 2 , 제 20 조의 3 , 제 20 조의 4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47 | 환경부 | 하수도법 제6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 점검 | 현장조사 |  |
| 648 | 환경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2항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 배 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49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적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50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실적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  |
| 651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 화학물질을 취급, 관리하는 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유독물질 영업자 관리 감독 <br>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연간실적 보고 등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652 | 환경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3 항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53 | 환경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 조제3항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 요구 |  |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54 |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시행규칙 제16조제8항 | 환경정보공개 등록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55 |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 28 조 | 환경전문공사업자 등록관리 | 현장조사 |  |
| 656 | 환경부 | 환경보건법 제 29 조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어린이용품 유해성 조사 어린이용품,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보고 <br>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  |
| 657 | 환경부 | 환경보건법 제 29 조 | 환경안전기준 관련 자료 보고 | 자료제출•보고요구 |  |
| 658 | 환경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시험•검사 업무 처리현황 보고, 조사 질문 | 보고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659 | 환경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측정기기 제작•수입자, 교정용품 공 급•사용자, 측정기기검사기관, 측정 대행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입 검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증표제시 |
| 660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 39 조, 제 49 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조사 | 현장조사 |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목록

|  | 소관부처 | 근거법령 | 행정조사명 | 조사유형 | 비 고 |
| :--- | :---: | :--- | :--- | :--- | :---: |
| 661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이행의 관리감독 | 현장조사 |  |
| 662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 자료제출 •보고요구 |  |
| 663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 | 환경영향평가업자 관리 감독 | 자료제출 $\cdot$ 보고요구 <br> 현장조사 |  |
| 664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보고 | 자료제출 •보고요구 |  |


[^0]:    1) 김재광 외,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쪽.
[^1]:    2）대한 상공회의소 2014년 기업부담지수 조사에서 조세（119），사회보험 등 준조세 （115），기타 기업부담（112）부문에서 행정조사로 인한 부담이 평균 136으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부담 늘리는 주범은 ‘행정조사•사회보험•법인세＂＂， 헤럴드 경제 2015．1． 19 기사 참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9000352\＆md＝20150119110118＿BL
    （2016．10． 31 최종방문）

[^2]:    3）홍정선，행정법원론（상），박영사， $2015,682 \sim 683$ 쪽．

[^3]:    10）조이현，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화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2007， 1 쪽．
    11）김신•최진식，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 원，2013，162－171쪽．
    12）국무조정실，2007년도 규제개혁백서，2008，934쪽．

[^4]:    15）국무조정실，2007년도 규제개혁백서，2008，934쪽
    16）국무조정실，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12．3）， 6－21쪽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7）신종익－임상준，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04
    18）김재광，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법학논총 제 33 권 제 2 호，단국대 학교 법학연구소，2009，491－493쪽．

[^5]:    19)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20-21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20)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심사보고서(2007. 4), 4쪽.
[^6]:    40）법제처，법령 입안•심사 기준，2013，425쪽．
    41）법제처，법령 입안•심사 기준，2013，425쪽．

[^7]:    44)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28쪽.
    45)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28쪽.
    46)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29쪽.
[^8]:    51）荒川民商事件判決，日本最判 1973．7．10．刑集 27 卷 7 號， 1205 面－김재광 외，앞 의 보고서， 49 쪽에서 재인용

[^9]:    52）北野弘久編，質問檢事權の法理，成文堂，1974，23－24面－김재광 외，앞의 보고서， 49쪽에서 재인용
    53）김재광 외，앞의 보고서，50쪽．

[^10]:    57)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1, 472-473쪽.
    58) 강현철 • 이세정, 앞의 보고서, 30 쪽.
    59) 강현철 • 이세정, 앞의 보고서, 30 쪽.
[^11]:    학교 법학연구소, 2014, 55쪽.
    62) 헌법 제 12 조제 2 항은 순수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순수한 행정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적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조사가 형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질문이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의 양 목적을 위해 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헌법상 진술 거부권 규정은 형사절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도 형사책임 추 궁을 위한 자료의 취득 수집과 직결되는 한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 자세한 내 용은 정한중, 앞의 논문, 60 쪽 참조.
    63) 정한중, 앞의 논문, 62 쪽.
    64) 정한중, 앞의 논문, 62 쪽.

[^12]:    65) 김동희, 앞의 책, 473쪽.
    66)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4,522 쪽.
    67) 김동희, 앞의 책, 473쪽.
[^13]:    70）대법원 2011．3． 10 선고 2009두 23617 판결

[^14]:    75）장은혜，＂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권리구제＂，국민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제 1 차 워크숍（2016．6．22）자료집，한국법제연구원， 32 －33쪽．

[^15]:    7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7156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흥기등상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7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3 조 및 제 24 조제 2 항 등
    77) 장은혜,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국민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제 1 차 워크솝(2016.6.22)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43 쪽.
[^16]:    79)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Subchapter II - Administrative Procedure)
    80) 이익현, 미국 행정법의 기초개념(4) - 행정정보의 수집과 공개(acquisi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 법제(2010. 10), 법제처, 48쪽.
    81)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 8 권제 3 호, 한국비교 공법학회, 2007, 92쪽.
    82) 14 U.S.C $\S 93$ (Commandant; general powers)
[^17]:    91) Peter L. Strauss, 이익현 역, 미국행정법 개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48-50쪽.
    92) Report to Congres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ties by Executive Branch Agencies and Entiti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Policy, available a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URLs_Cited/OT2014/13-1175/13-1175.pdf.
    93) Enforcement Manual,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Division of Enforcement, 2016, 41면.
    94) 이익현, 앞의 글, 51 쪽.
[^18]:    95)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181쪽.
    96)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 21 집, 2004, 181-182쪽.
    97)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 21 집, 2004, 182쪽.
    98)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19]:    99) 예컨대 Illinois v. Gates, 462 U.S. 213(1983), Florida v. Harris, 568 U.S. (2013).
    100) 박정훈 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1, 92-93쪽.
    101)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387 U.S. 523 (1967).
    102) District of Columbia v. Little, 339 U.S. 1 (1950).
    103) Frank v. Maryland, 359 U.S. 360 (1959).
[^20]:    113) 박정훈 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1, 93-95쪽.
    114) 박정훈 외, 앞의 보고서, 93쪽.
    115) Skinner v. Railway Labor Executive Association, 478 U.S. 602 (1989).
    116) 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 v. Von Raab, 489 U.S. 656 (1989).
[^21]:    117) Kentucky v. King, 563 U.S. 452 (2011).
    118) Payton v. New York, 445 U.S. 573 (1980).
    119) Raily v. California, 573 U.S. $\qquad$ (2014).
    120) Weeks v. United States, 232 U.S. 383 (1914).
[^22]:    134）藤原静雄，行政調査論の現状と課題—行政情報管理の視点を踏まえて一，筑波ロー・ ジャーナル（2009），p． 177

[^23]:    139）曽和俊文，앞의 논문，p． 73
    140）芝池義一，行政法総論講義〔第4叛〕，有斐閣（2001），p． 269
    141）芝池義一，앞의 책，p． 269
    142）静岡地裁，1951．12．4．行集32卷12号，p． 2205
    143）曽和俊文，앞의 논문，p． 74

[^24]:    144）曽和俊文，앞의 논문，p． 75
    145）曽和俊文，앞의 논문，p． 75
    146）曽和俊文，앞의 논문，p． 75

[^25]:    147）曽和俊文，앞의 논문，p． 72
    148）宇賀克也，行政手続法の解説〔改訂版〕，学陽書房（1995），p． 65

[^26]:    152）芝池義一，앞의 책，p． 273 ．
    153）東京地判， $1973 \cdot 8 \cdot 8$ 行集 24 卷 $8=9$ ，p． 763 ．

[^27]:    163）유승희，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행사 범위와 그 한계 ：정보통신망법 제 55조 개정안을 중심으로，2006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2），2006．9．，1쪽．
    164）유승희，앞의 글， 2 쪽．

[^28]:    172）김재광 외，앞의 보고서，54－55쪽．
    173）김재광 외，앞의 보고서，55쪽．
    174）김재광 외，앞의 보고서，55－56쪽．
    175）행정조사기본법（안）제 36 조（개인정보의 보호）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실시 와 그 결과의 처리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김재광 외，앞의 보고서，127쪽．

[^29]:    176）김영조，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법학연구 제 8 권제 3 호，한국비교 공법학회，2007，107－116쪽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30]:    177)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 8 권제 3 호, 한국비교 공법학회, 2007, 116쪽.
[^31]:    179) 중기 3곳 중 1 곳 "각종 신고로 행정부담 가중", 이데일리 2015. 12. 16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886406609599176\&D $\mathrm{CD}=\mathrm{A} 00306 \& O u t L n k C h k=Y) ~(2016.10 .31$ 최종 방문)
    180) 중기 3곳 중 1곳 "각종 신고로 행정부담 가중", 이데일리 2015. 12. 16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886406609599176\&D $\mathrm{CD}=\mathrm{A} 00306 \& \mathrm{OutLnkChk}=\mathrm{Y})(2016.10 .31$ 최종 방문)
[^32]:    181）국가법령정보센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6．8．4．］ ［법률 제13997호，2016．2．3．，일부개정］）일부 개정 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47\＆1sId＝\＆efYd＝20160804\＆chrClsCd＝010202 \＆urlMode＝lsEfInfoR\＆viewCls＝1sRvsDocInfoR\＃0000）

[^33]:    182) 이하의 목록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697 개의 목록 중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정리하고 새로운 규정을 발굴한 것으로서 보고서 본문에서 언급한 부처별 행정조사 개수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